## 「원전안전 분야(방사능 누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2020. 6.

Blue 관심

Yellow 주의

Orange 경계

Red 심각

농림축산식품부

□ 이 매뉴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5764호) 제34조의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및「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위기대응을 위한 절차·기준·요령과 각종 양식, 보도자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관련 부처・기관은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책임과 역할에 따라 「원자력안전 사고(방사능누출)」 발생 시 적용할 세부 대응절차와 제반조치사항이 수록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과 연계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대응 이외의 재난관리 단계별 임무・역할 등 일반적인사항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참조하여 활용한다.

###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 이 매뉴얼과 관련된 모든 업무담당자는 이 매뉴얼에 규정된 절차와 내용에 따라 재난상황에 대응하여야 한다.
 □ 다만, 재난상황이라는 것은 때와 장소, 재난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어 이 매뉴얼에서 규정한 것을 참고하여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여 탄력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되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 방사선비상이 발생하면 즉시 대응단계로 돌입하며, 이후 상황에 따라

적절히 비상대응조치를 수행한다.

## 〈제·개정 이력 >

개정번호 (승인일자)	주요 개정 내용	개정사유	담당부서	협의기관
0 (2016.4.28.)	• 원전분야 위기대응 표준매뉴얼 반영	• 표준매뉴얼 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제정		
1 (2018.6.30.)	• 인사이동 사항 반영	• 표준매뉴얼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 개정		
2 (2019.7.31.)	• 원안위 재난관리체계 및 재난관리제도 개선사항 등 반영 • 우리부 직제 개정사항 반영	•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개정사항 반영	농축산물 위생품질관리팀	원자력안전위원회
3 (2020.6.22.)	•비상연락망 현행화	•비상연락망 현행화	농축산물 위생품질관리팀	원자력안전위원회

I . <b>일반 사항</b>	
1. 목적	1
2. 적용 범위	1
3. 관련 법규	1
4. 용어 정의	2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1. 위기 형태	6
2. 전개 양상	6
3. 위기관리 체계	7
가. 종합체계도 7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8	
다.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방사선비상 발령 이후) 9	
4. 방사선비상 발령	0
가. 방사선비상 종류 및 대응조치 10	
나. 방사선비상 발령 절차 11	
다. 방사선비상 상황 전파 11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1. 목표	3
2. 방침	3
3. 위기대응 지침	4
4. 위기징후 목록	6

5. 위기경보	17
가. 위기경보 수준	17
나. 위기경보 절차	18
6. 위기관리 체계	20
가. 종합체계도	20
나. 위기관리 기구	21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체계	23
7. 농림축산식품부 비상단계별 근무편성 기준	26
가. 초기대응체계(~백색비상)	26
나. 청색·적색비상 발령시 대응체계	28
8. 자체 위기대응기구 운영방안	29
가. 위기경보 단계별 위기대응기구	29
나. 상황점검회의	29
다. 위험평가회의	29
TT OITH ASH STILLS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평시 예방 및 대비 활동	32
	0 <b>2</b>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1. 주의	33
2. 백색비상(경계)	34
3. 청색비상(심각)	36
4. 적색비상(심각)	39

복	<b>_</b>	
	<u> </u>	41
VI.	기관대응수칙	
1.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43
2.	농림축산식품부 대응 프로세스	44
3.	관련 부서·부처별 협업기능	45
4.	관계기관 주요 임무(방사능누출)	46
5.	방사능재난 대응 비상연락망	48
VII.	부 록	
1 3	주관부서 등의 위기수준별 위기관리 활동	55
1.	예방	55
2.	대비	59
3.	대응	63
4.	복구	78
2 9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82
3	방사선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95
4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104
5 (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현황	106
6 7	참고자료(서식)	107

## I. 일반사항

## Ⅰ. 일반사항

## 1 목 적

이 매뉴얼은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에서의 방사능 누출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정부적 재난 관리 및 기관별 활동방향을 규정한 것임

## 2 적용 범위

- 가. 대상 :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 시설의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되는 모든 정부부처·기관의 활동에 적용
- 나. 상황 :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 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또는 방사능 오염사고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적용
  - ※ 방사능테러상황 시에는 방사능테러대응체계를 적용

## 3 관련 법규

- 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법률 제15280호)
-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15764호)
- 다. 민방위기본법(법률 제14805호)
- 라.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 마.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위기관리 표준매뉴얼('19.02.)

구분	내용
국가위기	국가 주권, 영토와 국민의 생명·재산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가능성이 있거나 가해지고 있는 상태
위기관리	국가위기를 효과적으로 예방·대비하고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국가가 자원을 기획·조직·집행·조정·통제하는 제반 활동과정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유관기관	해당 재난에 대한 정부의 재난관리 활동에 있어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위기경보 수 준	<ol> <li>관심(Blue): 위기징후와 관련된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그 활동수준이 낮아서 국가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를 말한다. 관심 경보 단계에서는 징후 감시활동을 하고, 비상연락망 등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점검한다.</li> <li>주의(Yellow): 위기징후의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수 있는 일정 수준의 경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주의 경보 단계에서는 관련 정보수집 및 정보 공유 활동을 강화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가동한다.</li> <li>경계(Orange): 위기징후의 활동이 활발하여 국가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를 말한다. 경계 경보 단계에서 주관기관은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관련기관과 함께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을 준비한다.</li> <li>심각(Red): 위기징후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국가위기의 발생이 확실시되는 상태를 말한다. 심각 경보 단계에서 주관기관은 관련기관과 함께 관련 역량을 최대한 투입하여 위기발생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한다.</li> </ol>
위기관리 활동	<ol> <li>예방 : 위기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킴으로써 위기 발생 자체를 억제하거나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li> <li>대비 : 위기 상황 하에서 수행해야 할 제반 사항을 사전에 계획·준비·교육·훈련함으로써 위기 대응능력을 제고시키고 위기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강화 시켜 나가는 일련의 활동</li> <li>대응 : 위기 발생 시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고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위기 발생 또는 위기의 확대 가능성을 감소시키는 일련의 활동</li> </ol>

구분	내용	
위기관리 활동	④ 복구 :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위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 시키고, 평가 등에 의한 제도 개선과 운영체계 보완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며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활동	
사보타주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 또는 원자력시설을 파괴·손상 또는 그 원인을 제공하거나, 원자력시설의 정상적인 운전을 방해하거나 방해를 시도하는 행위를 통해 방사성물질을 배출하거나 방사선을 노출하여 사람의 건강·안전·재산·환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	
방사능	불안정한 원소의 원자핵이 스스로 붕괴하면서 방사선을 방출하려는 성질이나 능력으로서, 표준단위는 Bq(베크렐)을 사용. 1Bq는 1초에 하나의 핵이 변환 또는 붕괴되는 양 1 Ci(큐리) = 3.7×10 <sup>^10</sup> Bq	
방사선	물질 내에서 원자를 전리시키는 능력이 있는 입자선(알파입자, 베타입자 등) 또는 전자파(감마선, 엑스선 등)	
방사성물질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原子核分裂生成物) 등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 ※ 핵연료물질 : 우라늄·토륨 등 원자력을 발생할 수 있는 물질 ※ 방사성동위원소 :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방사선비상 계획구역 (EPZ)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옥내대파소개 등과 같은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집중적으로 마련하기위해 설정하는 구역으로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및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으로 구분 ※ EPZ: Emergency Planning Zone  ①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주민을 소개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조치를 실시하기위해 정하는 구역 ※ PAZ: Precautionary Action Zone  ②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주민에대한 긴급보호조치를 위해 정하는 구역 ※ UPZ: Urgent Protective Action Planning Zone	

	구분	내용	
	비상상황	<ul> <li>대규모 피해 발생 우려로 일상적 대응보다 훨씬 강화된 조치나 특별한 의사결정이 요구되는 상황</li> <li>비상상황은 진행양상과 대처내용에 따라 결과수습형, 완만 진행형, 순간증폭형으로 구분</li> </ul>	
결과 수습형 •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드		• 상황 발생 자체가 이미 대규모 피해로 나타난 유형	
	완만 진행형	• 상황이 서서히 진행되면서 심각성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유형	
	순간 증폭형	• 발생 초기에는 저강도 비상상황으로 보여지나, 진행과정에서 심각한 상황으로 급변하면서 대응력의 한계가 노정되고 실패시 중대재난으로 귀결되는 유형	

# Ⅱ. 위기 유형과 방사선 비상

## Ⅱ. 위기 형태와 관리 체계

1 위기 유형

#### □ 사고 원인

- ㅇ 자연재난, 인적오류 등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 ㅇ 중요 핵심부품의 결함에 의한 방사능 누출

### □ 사고 유형

○ 국내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 방사능 누출로 인해 주변지역 가축·식수 오염, 인근 지역주민 방사선 피폭 등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

## 2 전개 양상

- 자연재난, 인적오류 등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
- 중요 핵심부품의 결함에 의한 방사능 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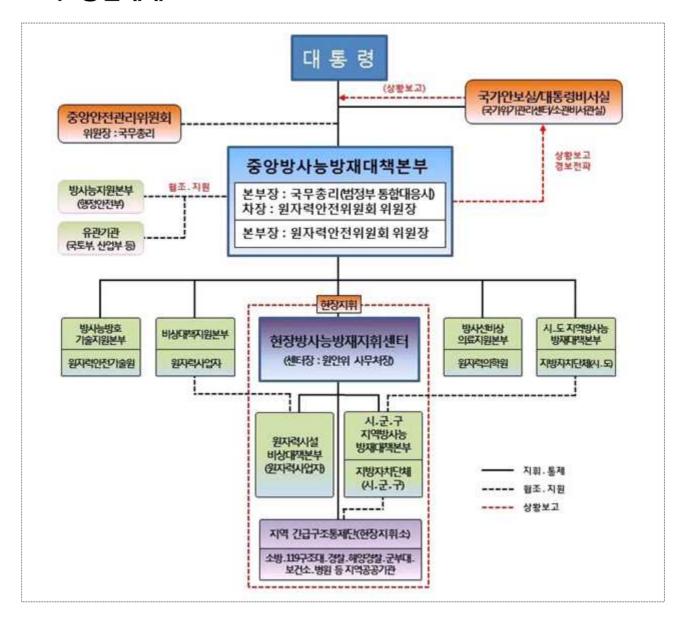
○ 원자력시설 외부로의 방사능 누출로 인한 피해



- 발전소 종사자 및 인근지역 주민 방사선 피폭
- 인근지역 농·수산물, 가축 및 취수원 오염
- 방사성물질의 침적으로 인한 피해확산

## 3 위기관리 체계

#### 가. 종합체계도



#### □ 유관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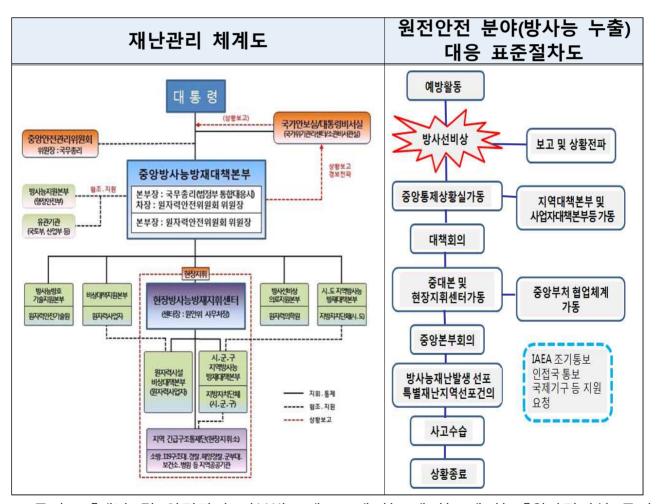
- o (중앙대책본부 파견) 중앙행정기관(18개 기관)\*, 전문기관(안전기술원의학원), 원자력사업자
  -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 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 o (현장지휘센터 파견) 중앙행정기관, 광역·기초지자체, 지역 군·경·소방, 전문기관(안전기술원·의학원), 원자력사업자
- o (원자력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원자력발전소), 한국원자력연구원(연구용원자로)

## 나. 위기관리 기구의 임무와 역할

구분	임무와 역할
<b>국가안보실</b> (국가위기관리센터)	<ul> <li>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li> <li>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li> <li>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li> </ul>
<b>대통령비서실</b> (소관 비서관실)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후속대응 및 복구
중앙안전관리위원회	• 재난관리에 있어 국가차원의 중요정책 조정·심의
ZOLHLIIL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의 이행 • 방사능 재난의 평가 및 발생의 선포 • <mark>방사능재난</mark> 수습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 총괄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본부회의 본부장(원안위위원장) 유관기관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국무총리* 또는 원안위 위원장)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가 중대본부장 권한 행사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종합조정반 현장지원반 홍보협력반 유관기관 연락반
중대본구성 전인 영사	* 본부회의 참석 유관기관 :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소방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유관기관 연락반 : 본부회의 위원 소속기관 파견관 등
	• 방사능재난 현장대응활동 총괄 지휘 • 주민보호 의사결정을 위한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주관 • 시·군·구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휘 및 방재요원 임무 부여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 ( <mark>원안위 사무처장</mark> )	한정방사능방재지휘센터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언합정보센터 연합정보센터 용합조정반 사고분석반 방사선평가반 주민보호반 의료지원반 운영지원반 합동방사선 감시센터 비상진료센터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 부처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기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 약품안전처,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u>(광역·기초</u> <u>지방자치단체장)</u>	<ul> <li>지역방사능방재계획,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의 이행</li> <li>지방행정기관과의 행정조치 및 업무 협조</li> <li>긴급구조활동 지휘 및 통제</li> <li>주민보호조치 이행</li> </ul>

구분	임무와 역할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ul> <li>비상대응시설 가동 및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li> <li>사고.복구 현황 보고</li> <li>사고확대 방지, 원인조사, 피해복구 및 제염활동</li> <li>사고영향평가, 주민예상피폭선량평가, 주민보호조치 권고 등 비상대응활동 수행</li> </ul>
방사능 방호기술지원본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ul> <li>사고해석 및 평가·예측</li> <li>방사선측정, 방사선영향 평가</li> <li>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li> <li>방사선방호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li> </ul>
방사선 비상의료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장)	<ul> <li>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운영</li> <li>방사선피폭 환자 제염·치료</li> <li>방사선 인체영향과 관련된 전담상담팀 운영 지원</li> </ul>

## 다. 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방사선비상 발령 이후)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제1항·제3항·제4항,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제25조제1항 및 제26조

## 4 방사선비상 발령

## 가. 방사선비상 종류 및 대응조치

구 분	정 의	대응조치
백색비상	o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 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 o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ul> <li>비상발령보고, 상황전파</li> <li>사고확대방지응급조치</li> <li>원자력사업자 비상대응시설의 운영</li> <li>지역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상황실 및 연합 정보센터)</li> </ul>
청색비상	o 백색비상에서 안전상태로의 복구기능의 저하로 원자력시설의 주요 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o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ul> <li>백색비상 대응조치 수행</li> <li>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li> <li>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li> <li>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 운영</li> <li>기술 및 의료지원 조직 운영</li> <li>지역방재대책본부 확대 운영</li> </ul>
적색비상	o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 시설의 최후방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o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ul> <li>청색비상 대응조치 수행</li> <li>방사능재난 발생 선포 검토</li> <li>원자력시설 주변 주민에</li> <li>대한 보호조치 실시</li> </ul>

#### 나. 방사선비상 발령 절차

#### ■ 비상발령

- 시설 운전상태가 비상계획서에서 정한 비상발령기준에 해당됨을 확인한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로운전책임자**는 방사선비상을 발령

#### ■ 비상발령 보고

- 원자력사업자는 비상발령 즉시 해당 방사선비상계획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소외 방사능방재대책기관에 구두 보고 및 통보
  -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지역사무소장), 관할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 다. 방사선비상 상황 전파

- 원자력안전위원회(지역사무소)
- 지역사무소장은 접수받은 비상발령 상황을 방재환경과,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보고·전파

#### ■ 원자력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 방재환경과장은 보고받은 비상 상황을 위원장, 사무처장, 방사선 방재국장,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전파
-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 소속기관에 비상발령 상황 전파

#### ■ 광역・기초자치단체

- 광역·기초지자체의 장은 보고받은 발령상황을 읍·면·동 등 하위 ·소속기구 등에 전파
- 지역 군·경·소방관서 및 교육청 등에 비상발령 상황 전파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통보받은 비상발령 상황 인지여부를 원자력 안전위원회(방재환경과),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확인 (비상발령 상황 인지 교차 확인)

##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 Ⅲ. 위기관리 기본방향

## 1 목 표

- 가. 국내 원전 시설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 시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강화하고, 조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 불안감 최소화
- 나. 방사능 누출 시 신속한 검사 및 처분을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 및 농축산물의 안전성 확보

## 2 방침

- 가. 주관기관, 유관기관으로부터 신속한 정보 입수 및 상호 협력· 대응 체계 유지
  - 대응기관 간 신속·정확한 상황 전파 및 공유 체계 확립
  -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정보입수 활동 강화
- 나. 국내 농축산물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 최적의 대응활동 전개
  - 국내 전문가, 전문기관 등과 연계한 정확한 평가·예측
  - 농림축산식품 유관기관 간 일관된 대응체계 전개
- 다. 신속·정확한 정보공개를 통한 국민 안심 제공
  - 국내산 농산물 및 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 신뢰 확보
  - 유언비어 등으로 인한 국민 동요 및 심리적 공황 등의 방지

## 위기대응 지침

#### 가. 대응개념

- 목표
  - 원전 주변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추진
  - 방사능 누출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 대응방향
  - 방재 대응시스템 총 가동, 피해 최소화 주력
  -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가동
  - 2차 사고에 대비한 현장대응 및 수습 활동

#### 나. 대응지침

- 1) 관계기관 합동 현장 위주의 신속하고 유기적인 초동 대응
  - 농축산인을 포함 지역주민 대피 및 구조활동 전개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기관별 위기 대응활동 개시
  - 농축산물 피폭우려 또는 가능 지역범위 설정 및 통제선 구축
- 2) 방사능 누출 사고 발생 시 국내 농축산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성 조사 체계 구축 및 조사 실시
  - 사고발생시 농관원 주관 방사선 조사원 및 분석체계 정비
  - 현장 시료채취를 위한 현장점검반 구축 및 방사능 피폭 최소화를 위한 장비 확보
  - 신속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시료 이동 수단 확보

- 3) 농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조사결과 후속 대응
  - 검사결과를 신속·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운영
  - 부적합 농축산물 유통차단을 위하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와 협업하여 폐기 관리
  - 지자체와 협업하여 오염우려지역 내 농축산물의 재배·생산 현황 등 피해 규모 파악 및 수급대책 마련
  - 비오염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대책 추진
  - 각 국 농축산물에 대한 검역조치 모니터링 강화

## 위기징후 목록

위기 형태 (4개)	위기징후 (5개)	감시수단 (9개)	감시방법	조치 (대비ㆍ대응)	
	1.1 원전 불시정지 ※각종 수동 및 자동정지 포함	○한수원 원전 종합 상황실 (24시간 근무)	○ 원전 운전변수 감시 ○ 조기경보 프로그램을 통한 발전소 건전성 확인	○불시정지 대비 대응태세 가동 ○사고·고장 및 특이징후 발생 시 초기 상황파악 및 보고(지역사무소) ○필요시 사건조사 및 대응조치 (본부·지역사무소 등)	
1. 원자력 시설 사고·고장		∘ KINS AtomCARE 시스템	o 원전 운전변수 감시		
VIT.T.O	1.2 각종 검사·점검 과정에서 특이징후 발견	○ 일상검사, 특별검사	o 검사과정에서 발행된 지적사항표 등		
2. 지진	2.1 지진 진동 감지	o 지진감시기 계측값 (기상청, 원전, KINS)	○ 지진감시기 모니터링 ○ 기상청 지진정보 발표	○감시 강화, 지진영향 분석, 상황대응반 운영	
3. 태풍	3.1 태풍 등에 의한 특이징후 발생	○기상청 예보 ○원전 기상감시	○ 기상예보 모니터링 ○ 원전 기상상황 감시	○재난 감시 강화, 사전 대비태세 점검, 상황대응반 운영 ○특이징후 발생 시,	
4. 화재	4.1 방사선관리구역 내 화재발생	○ 화재감시기 ○ 운전원 ○ 외부소방서	<ul><li>화재감시기</li><li>모니터링</li><li>운전원</li><li>현장순시</li></ul>	초기 상황파악 및 보고(지역사무소) ○필요시 사건조사 및 대응조치 (본부·지역사무소 등)	

## 5 위기 경보

## 가. 위기경보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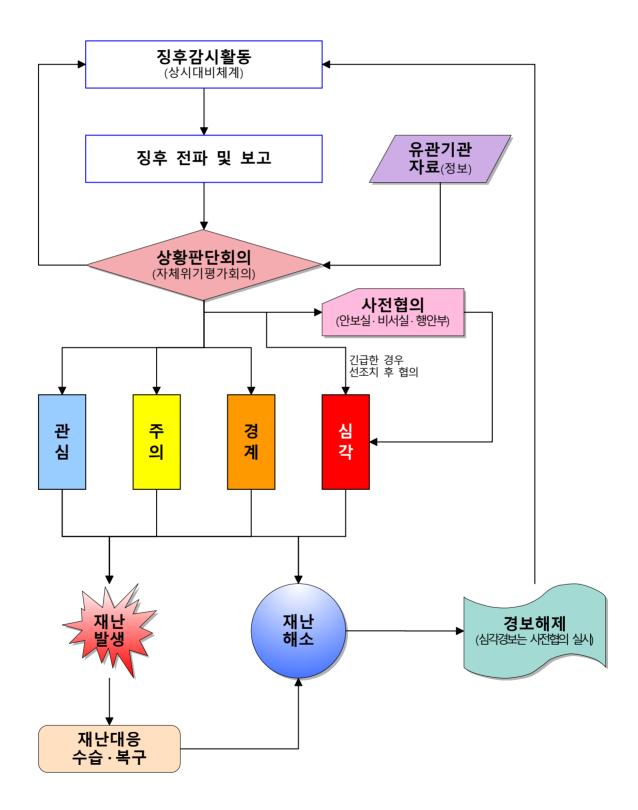
	판단기준	비 고
-	o 기기 고장, 종사자의 실수, 절차의 결함 등으로 인하여 운전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징후활동 감시
-	o 방사선비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계통의 경보 발생	협조체계 가동 및 대비 계획 점검
경계 Drange) 백색 비상 이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안전 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대응태세 점검 및 대응체계 가동
<mark>청색비상</mark> 적색비상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즉각 대응조치 시행
	비상 청색비상	- 등으로 인하여 운전요건을 벗어난 비정상적인 상태  - 이 방사선비상으로 확대 가능성이 있는 계통의 경보 발생  아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안전 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아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sup>※ (</sup>방사선비상 이전) 위기경보 수준(관심, 주의)에 따라 관련 절차를 수행 (방사선비상 이후) "방사능방재법"에 따라 규정된 절차 이행

#### 나. 위기경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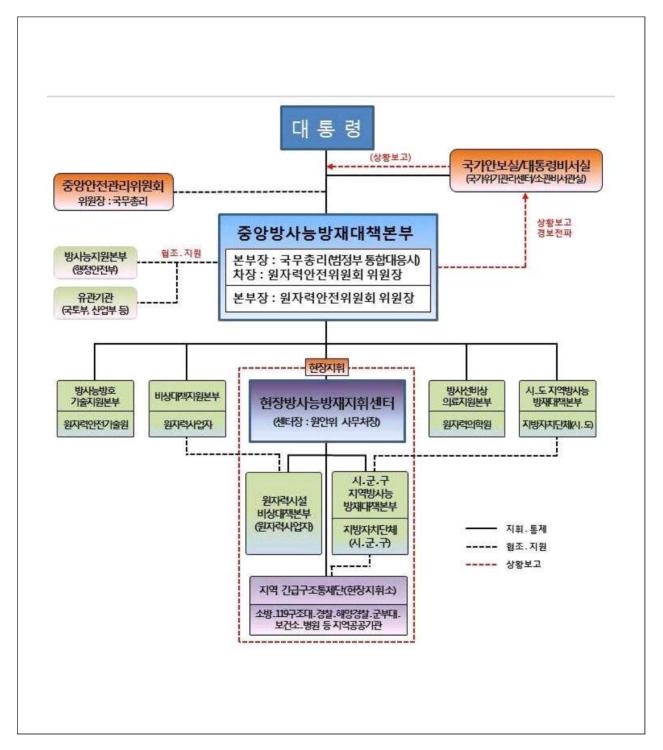
- (1)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은 소관분야에 위기 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그 위협 또는 위험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운영하고 평가 및 판단 결과에 따라 위기경보를 발령
- (2) 위기평가 시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의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 하여 평가
- (3)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은 위기경보 발령 시 국가안보실(국가 위기관리센터) 및 관련기관에 신속히 통보하고, 범정부차원의 평가와 조치가 요구되는 수준(심각)의 경보 발령 시에는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 하에 경보 발령
- (4) 심각단계 위기경보 수준을 수정 및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및 행정안전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 (5)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은 제4항에도 불구,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위급상황의 경우에는 사전조치(경보발령 등)를 시행한 후 즉시 국가안보실과 행정안전부에 통보

## 위기경보 발령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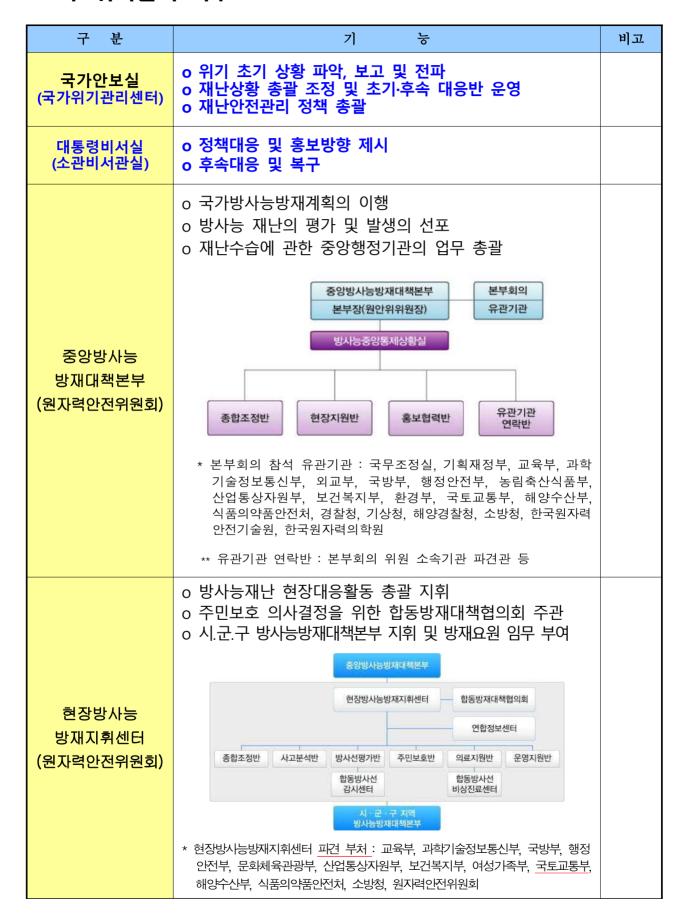
## 6 위기관리 체계

#### 가. 종합체계도



※ 유관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 나. 위기관리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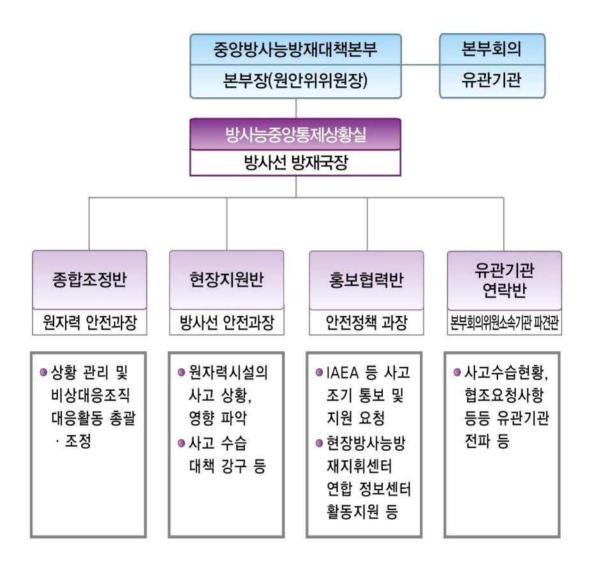


지역방사능 방재대책본부 (시·도 및 시·군·구) 이 주민보호조치 이행  o 지역방사능방재계획,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의 이행 o 지방행정기관과의 행정조치 및 업무 협조 o 진급구조활동 지휘 및 통제 o 주민보호조치 이행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o비상대응시설 가동 및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oo사고.복구 현황 보고 o사고확대 방지, 원인조사, 피해복구 및 제염활동 oo사고영향평가, 주민예상피폭선량평가, 주민보호조치 고 등 비상대응활동 수행		
방사능 방호기술지원본부 (원자력안전기술원) o 사고해석 및 평가·예측 o 방사선측정, 방사선영향 평가 o 주민예상피폭선량 평가 o 방사선방호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		
방사선 비상의료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o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 지원		
중앙안전관리 이 안전관리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이 국가 안전관리기본계획안 심의 이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 조정		

####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대응체계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설치·운영

○ 구성



※ 유관기관(연락반):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 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 력연구원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파견 부처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 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 전처. 소방청. 원자력안전위원회

## ○ 기 능

구 분		분	주 요 역 할
	본	-부회의	o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조치사항, 주 민보호를 위한 긴급 지원사항 등 의결
중앙 방사능 방재 대책 본부 상황실		종합 조정반	o 중앙본부장,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에 상황 종합 보고 o 상황정보 종합관리 o 본부회의 운영 o 실무반 역할 조정 및 운영
	중앙	현장 지원반	o 원자력시설 사고 상황, 사고예측 결과 종합 o 현장지휘센터 대응활동 및 지원필요사항 종합 검토 o 사고 수습대책 강구
	홍보 협력반	o 연합정보센터 운영지원 o 재난온라인방송, 재난 문자전송 요청 o IAEA 및 주변국에 사고 정보 제공 및 지원 요청	
		유관기관 연락반	o 본부회의 안건 실무 검토 조정 o 본부회의 의결사항 및 협조요청사항 소속 부처 전파 및 이행 종합 o 해당 유관기관 상황정보 공유 및 업무 연락
		합동방재 대책협의회	o 방사능재난 등의 수습과 주민보호대책에 대한 현장방사 능방재지휘센터장 자문
		연합정보센터	o 보도자료 제공, 기자회견, 언론대응 총괄
현장 방사능 방재 지휘센터	방재 종합조정반 이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업무 종합 및 대외기 이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운영 및 실무반간 업무결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업무 종합 및 대외기관 창구 o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운영 및 실무반간 업무조정
	_ '	사고분석반	o 원자력시설 사고 상황 수집 및 분석 o 방사선원항 평가 및 예측
		방사선평기반	o 현장 방사선영향평가 및 긴급 방호활동 o 합동방사선감시센터 현장 활동 총괄.지휘

구 분		주 요 역 할
	주민보호반	o 주민보호조치 총괄 o 주민보호조치와 관련한 현황파악, 종합 및 자료관리
	의료지원반	o 현장 방사선감시 및 평가.분석 o 지역, 기자재, 장비 및 차량에 대한 오염 관리
	운영지원반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시설.장비 운영.관리 등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출입인원.장비의 통제
	합동 방사선 감시센터	o 현장 방사선감시 및 평가.분석 o 지역, 기자재, 장비 및 차량에 대한 오염 관리
	합동 방사선 비상 진료센터	o 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 총괄 조정
시·도 지역방사능방재 대책본부		o 주민보호조치 이행
시·군·구 지역방사능방재 대책본부		o 주민보호조치 이행
방사능방호 기술지원본부		o 사고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 지원
방사선비상 의료지원본부		o 방사선 상해자에 대한 의료조치 지원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o 사고 확산방지 및 수습

## 7 농림축산식품부 비상단계별 근무편성 기준

## 가. 초기대응단계(~백색비상)

### □ 관련 부서별 임무(대책반 구성 전)

구 분		주 요 임 무
	농축산물 위생품질관리팀	○ 국내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주관기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원자력발전소 고장·사고 발생현황 모니터링 강화
본부	본부 축산환경자원과	○ 관련협회(한국사료협회·한국단미사료협회)의 국내 사료 방사능 오염검사실태 점검
	대변인실	○ 국민안심, 유언비어 차단 등을 위한 신속한 정보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의 개발
소속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 국내 농산물 방사능 오염검사와 관련한 분석 방법, 조사장비의 확충, 조사인력의 전문성 배양
기관	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ul><li>○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안전성 평가</li><li>○ 방사능 관련 국내외 농축산물 안전정보 동향 파악</li></ul>

### □ 근무자 편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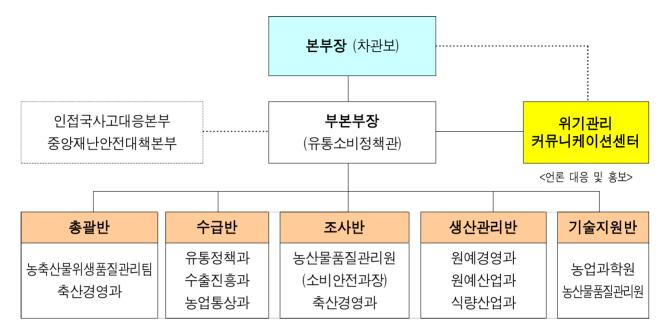
○ 각 분야별 소관 부서(과)별 2명(사무관 이상 1, 주무관 1) 지정하여 부서 내 정위치 근무(총 20명)

## □ 근무요령

- 근무시간 : 주간근무를 워칙으로 필요시 전일 및 공휴일 근무
- 상황보고(통보) :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에 1일 1회 보고(필요시 조정)

### 나. 청색·적색비상 발령 시 대응체계

#### □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구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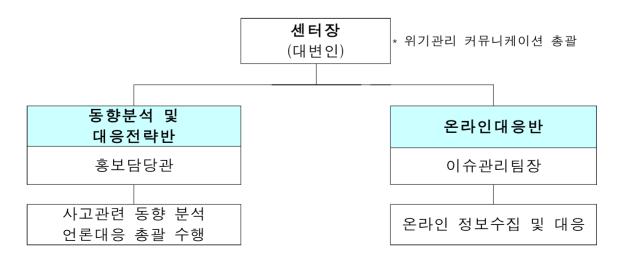


- ※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본부장을 장관 또는 차관으로 격상
- 운영기간 : 청생비상 ~ 상황종료시
- 조직 구성 및 임무
  - 본부장, 부본부장 아래에 5개반(총괄반·수급반·조사반·생산관리반·기술 지원반)을 두고, 각 반별로 5명 내외로 구성
    - \* 검역정책과는 해외 검역 조치 및 동향을 파악하여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센터 및 총괄반에 정보 공유 등 협조
  - 언론대응을 전담할 조직으로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구성·운영
- 각 반별로 각종 상황의 신속한 파악·보고, 관계기관과 협조체계 유지(자료제출 포함) 업무 등을 중심으로 이행
- 각 반별로 반장이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내부적으로 세부 운영팀을 구성·운영 가능

## □ 각 반별 주요 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주관부서
본부장	○ 농축산물 안전 위기대응 총괄	차관보
부본부장	○ 본부장 보좌 및 업무 조정	유통소비정책관
총괄반	<ul><li>○ 일일상황 및 대책 종합</li><li>○ 유관기관, 소속기관 협의 및 보고</li><li>○ 안전성 검사결과 종합 및 관리대책 강구</li></ul>	<del>농축산물</del> 위생품질관리팀 축산경영과
수급반	<ul><li>○ 농축산물 시장동향 보고</li><li>○ 농축산물 소비촉진 및 시장기능 회복대책 강구</li><li>○ 국내 수급불안 시 해외 농산물 도입방안 강구</li></ul>	유통정책과 수출진흥과 농업통상과
조사반	○ 산지 농축산물 안전성 검사 ○ 시·도 및 농업인 단체와의 협조체계 유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생산 관리반	○ 농축산물 생산 동향 파악 및 관리 ○ 오염농축산물의 관리(폐기, 출하금지 등)	원예경영과 원예산업과 식량산업과
기술 지원반	○ 오염농축산물에 대한 안전수준 평가 등 기술지원	농관원(시험연구소) 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 가. 위기경보 단계별 위기대응기구

위기경보 구분	백색비상 (White)	청색비상 (Blue)	적색비상 (Red)
위기대응기구	상황점검회의	위기평가회의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책임자	유통소비정책관	차관보	차관보 (필요시 장·차관)

#### 나. 상황점검회의

(1) 참석대상 : 유통소비정책관(주재),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유통 정책과장, 비상안전기획팀장, 국립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 (2) 논의사항

- 방사능 누출사고 크기, 위해정보에 따른 조치의 시급성 여부 판단
- 생산단계 농산물 방사능 안전성조사 확대여부 논의

#### (3) 조치 검토사항

- 누출사고 인근지역 농축산물에 대한 방사능 오염 관리·검사체계 점검
- 방사능 누출사고 인근지역 농산물 중 수출 품목 현황 파악 및 방 사능검사 실시

#### 3. 위기평가회의

(1) 참석대상: 차관보(주재), 유통소비정책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유통정책과장, 원예산업과장, 원예경영과장, 식량산업과장, 축산경영 과장, 검역정책과장, 수출진흥과,홍보담당관, 비상안전기획팀장, 국립 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 (2) 논의사항

○ 정보의 심각성, 예상피해 범위, 확산 가능성, 농업인 등 주요 이해 관계자의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대응방안 논의

#### (3) 조치 검토사항

- 국내산 농산물과 사료 등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조사 확대(조사품목 및 조사건수 확대 등 포함)
- 국내 농산물 오염 가능성, 소비 위축 등에 대비하여 품목별로 수급대책 점검
- 누출사고 인근지역 수출 농산물 방사능 검사 지원 및 주요 수출국 동향 파악
- 국내 방사능 사고에 따른 인접 국가 검역 조치 동향 파악

#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Ⅳ.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평시 예방 및 대비 활동

#### 가. 중점

- ◈ 국내 농산물의 방사능 물질 오염 조기 탐지를 위한 상시 모니터링 및 감시체계 구축
- ◆ 국내 원전시설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비한 방사능 오염 검사장비 확충 및 검사기법 등의 개발
- ◆ 위기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나. 세부 활동내용

- 국내 원전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주관기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국내 농산물 방사능 상시 모니터링으로 방사능 오염 조기 탐지 체계 마련
- 국내 농축산물 방사능 오염검사와 관련한 분석방법, 조사장비의 확충, 조사인력의 전문성 배양
- 국민안심, 유언비어 차단 등을 위한 신속한 정보공개 절차 및 방법 등의 개발

#### 다.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주 요 임 무	
본부	농축산물 위생품질관리팀	○ 국내 원자력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주관기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원자력발전소 고장·사고 발생현황 모니터링 강화	
	축산환경자원과	○ 관련협회(한국사료협회·한국단미사료협회)의 국내 사료 방사능 오염검사실태 점검	
	대변인실	○ 국민안심, 유언비어 차단 등을 위한 신속한 정보공 개 절차 및 방법 등의 개발	
소속 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 국내 농산물 방사능 오염검사와 관련한 분석 방법, 조사장비의 확충, 조사인력의 전문성 배양	
	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안전성 평가 ○ 방사능 관련 국내외 농축산물 안전정보 동향 파악	

#### 위기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 1 주의

#### 가. 상황

○ 원전 내부 문제 발생으로 원자로 불시 정지 발생하였으나, 방사성 물질 외부 누출 및 사상자 미발생

#### 나. 조치사항

-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적극적 동참
- 주관기관,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연락 체계를 유지함으로써 관련 정보 입수 및 상황 파악
- 방사능 누출사고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내 관련 부서, 소속기관 간 협력·연락 체계 구축·운영
- 본부, 소속기관, 산하기관 간 일원화된 대응체계 유지
- 위기수준별, 부서별, 기관별 명확한 역할 분장 및 협력 체계 유지
-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 발령
  - 주관기관(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경보 발령과 연동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위기수준별 대응책 마련·전파
- 백색비상 발령 시 농림축산식품부 자체 상황점검회의 실시
- 사고발생 원자력시설 인근지역 농산물 안전관리
- 인근지역 농산물(사료 포함) 방사능 조사 실시, 오염 시 폐기하고 유통 제한 조치
- 선제적 위기대응을 통한 국민 안심 달성
  - 위기수준에 따라 국내산 농·축산물, 농경지 등에 대해 방사능 물질 오염검사 확대
- 오염 확인 물량에 대해서는 폐기·반송하여 유통 차단
- 검사결과와 사후 조치사항의 신속・투명한 공표로 과도한 불안감 확산 차단

# 2 백색비상(경계)

#### 가. 상황

-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의 손상 또는 원자력시설의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의 사고
-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건물 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 나. 조치사항

- 위기 상황 접수
- 위기 상황 징후 포착
  -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백색비상 접수(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 위기상황평가 및 위기경보 발령
- 농림축산식품부 상황점검회의 소집/개최
- 상황 분석 및 평가 : 위해정보에 따른 조치의 시급성 여부, 누출사고의 크기, 국내 조치 동향 등 분석 검토
- 위기경보 발령사항 보고 및 전파(관련부서, 소속기관 등)
- 징후 및 기관별 임무/역할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농축산물 위생품질관리팀	<ul> <li>상황점검회의 운영</li> <li>중앙방사능사고방재대책본부(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위기경보 및 상황 접수</li> <li>본부 관련부서, 산하기관 등에 신속 전파, 위기수준에 따른 대응조치 지시</li> <li>국내 농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계획) 검토</li> </ul>
유통정책과	• 농축산물 생산·소비·가격 등 수급동향 모니터링

부서	임무와 역할		
원예경영과 원예산업과 식량산업과	• 방사능 누출 지속 시 국내산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과 수급계획 검토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	<ul> <li>방사능 누출 지속 시 국내산 축산물에 미치는 영향과 수급계획 검토</li> <li>국산 사료 방사능 안전성 검사계획 점검</li> </ul>		
검역정책과	•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각 국의 검역조치 내용 모니터링		
대변인실	<ul> <li>기자간담회, 브리핑, 기고 등 일상업무 유지</li> <li>국내·외 언론매체 취재동향 및 온라인 논의동향 관찰</li> <li>언론사 정보제공 및 협조체계 점검</li> </ul>		

# 라. 소속기관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 국내외 농축산물 안전정보 동향 파악 • 방사능 안전성 조사·연구 강화 검토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ul> <li>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IERNet) 데이터 모니터링</li> <li>국내산 농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체계 점검</li> </ul>	

# 3 청색비상(심각)

#### 가. 상황

- 백색비상에서 안전 상태로의 복구기능의 저하로 원자력시설의 주요안전기능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 부지내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상태

#### 나. 조치사항

#### 1) 조치목록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국무조정실), 방사능방재지원본부(국민안전처) 등 범정부 위기관리기구와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여 혼선 예방
- 오염 우려 농·축산물에 대한 신속·정확한 방사능 조사를 통해 소비자 불안감 해소 및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
- 피해 농업인 지원 및 경영안정대책을 강구하여 농축산업계의 불안감과 피해를 최소화

#### 2) 조치내용

- 위기 상황 접수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방사선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 접수 및 소속부서·유관기관 등 전파
- 위기상황평가 및 위기경보 발령
  - 농림축산식품부 위기평가회의 소집/개최 : 정보의 심각성, 예상피해 범위, 확산 가능성, 주요 이해관계자 동향 등을 종합 검토하고 대응전략 모색
  - 위기상황 분석 및 평가
- 위기경보 발령사항 보고 및 전파

- 국내 농산물(사료) 방사능 안전성 검사 철저 추진
  - 조사품목 및 조사건수 확대 등 포함
- │ 품목별 수급대책 점검
- 국내산 농산물 오염 가능성에 따른 소비 위축 등에 대비하여 품목별로 수급대책 점검 추진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농축산물 위생품질관리팀	<ul> <li>○ 위기평가회의 실시</li> <li>○ 주관기관·유관기관·소속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li> <li>○ 방사능 오염 우려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 계획 수립 및 관리대책 총괄</li> </ul>		
유통정책과	<ul> <li>○ 농축산물 생산·소비·가격 등 수급동향 모니터링</li> <li>○ 비오염 농축산물 소비촉진방안 등 수급안정대책 수립·추진</li> <li>○ 피해 농업인·업계 지원대책 수립 등 시장기능 회복대책 마련</li> </ul>		
원예경영과 원예산업과 식량산업과	<ul> <li>○ 방사능 오염 취약 품목의 생산 동향 및 오염 발생시 수급대책 마련</li> <li>○ 방사능검사 부적합 품목에 대한 출하제한대책 마련</li> <li>○ 피해 농업인 지원 및 경영안정대책 마련</li> </ul>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	<ul> <li>○ 방사능 오염 취약 품목의 생산 동향 및 오염 발생시수급대책 마련</li> <li>○ 방사능검사 부적합 품목에 대한 출하제한대책 마련</li> <li>○ 피해 축산인 지원 및 경영안정대책 마련</li> <li>○ 수입산 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li> </ul>		
수출진흥과	○ 해외 수출 농산물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		
검역정책과	○ 방사능 누출사고 장기화에 따른 인접한 각 국의 검역조치 내용 모니터링 강화		
대변인실	○ 국내외 언론 동향 모니터링		

# 라.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농산물품질관리원	<ul><li>○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IERNet) 데이터 모니터링</li><li>○ 국내산 농산물 방사능 안전성조사 실시 및</li></ul>		
(소비안전과)	유관기관(식약처, 지자체 등) 결과 통보 <li>○ 방사능 오염 농산물의 폐기 등 행정 지도</li>		
농업과학원	<ul><li>○ 국내외 농축산물 안전정보 동향 파악 강화</li><li>○ 방사능 물질 오염 최소화를 위한 영농관리기법</li></ul>		
(화학물질안전과)	연구·보급 <li>○ 방사능 오염 농축산물 관리 해외사례 연구·보금</li>		

# 4 적색비상(심각)

#### 가. 상황

- 노심의 손상 또는 용융 등으로 원자력시설의 최후방벽에 손상이 발생 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
-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사태

#### 나. 조치내용

- 비상발령 상황 접수·공유
-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로부터 방사선비상 발령 및 대응조치 지시 접수 및 소속부서·유관기관 등 전파
-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가동 및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운영
- 차관보를 본부장으로, 5개반 구성하여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위기확산을 방지
-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강화 및 오염농축산물 출하제한 대책 마련, 국내 농산물 수급관리 등
- 대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일관된 정부방침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핵심이슈 관리

#### 다. 부서별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가동(총괄반 담당)		
농축산물	○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일일 상황 및 대책 종합		
위생품질관리팀	○ 소속기관,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총괄		
	○ 안전성 검사결과 종합 및 관리대책 강구		

부서	임무와 역할		
유통정책과	<ul><li>○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수급반) 참여</li><li>○ 방사능 누출사고에 따른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수립 추진</li><li>○ 비오염 농축산물 소비촉진대책 추진</li></ul>		
원예경영과 원예산업과 식량산업과	<ul><li>○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생산관리반) 참여</li><li>○ 방사능 안전성 검사 부적합 품목에 대한 출하제한대책 마련</li><li>○ 피해 농업인 지원 및 경영안정대책 검토</li></ul>		
축산경영과 축산환경자원과	<ul> <li>○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총괄반·조사반) 참여</li> <li>○ 방사능 안전성 검사 부적합 품목에 대한 출하제한대책 마련</li> <li>○ 피해 축산인 지원 및 경영안정대책 검토</li> <li>○ 방사능 누출사고 국가에서 생산한 사료에 대해 수입규제조치 검토</li> </ul>		
수출진흥과	<ul><li>○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수급반) 참여</li><li>○ 해외 수출 농산물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li></ul>		
농업통상과	○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수급반) 참여 ○ 방사능 누출사고 장기화 및 국내산 농산물 오염으로 수급불안 시 해외 농산물 도입 방안 마련		
검역정책과	○ 방사능 누출사고에 대한 각 국의 검역조치 내용 모니터링		
대변인실	○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센터' 가동		

# 라. 유관기관 임무와 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ul><li>○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조사반·기술지원반) 참여</li><li>○ 국내산 농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물량 확대</li><li>○ 오염 농산물 조치 이행여부 확인</li></ul>		
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ul><li>○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기술지원반) 참여</li><li>○ 방사성 물질 오염 최소화를 위한 영농관리기법 연구</li><li>○ 방사능 오염 농축산물 관리 해외사례 연구</li></ul>		

### 복구

#### 가. 중점

- 주관기관, 유관기관 및 소속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조속한 사고 수습에 전력
- 농축산분야 피해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 나. 세부 활동내용

- 범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 지원
- 오염 농경지 제염, 방사능 오염 농축산물의 처리 지원
  - 안전성 조사 추가 실시로 방사능 오염 농축산물의 유통 차단
- 방사능 비오염 농축산물 유통·소비 촉진 대책 마련

#### 다. 관련 부서·기관별 임무·역할

부서	임무와 역할
농축산물 위생품질관리팀	<ul><li>○ 농축산 분야 복구대책 수립 총괄</li><li>○ 오염 인근 지역 안전성 조사 추가 실시</li></ul>
유통정책과 원예경영과 원예산업과 식량산업과 축산경영과	<ul> <li>○ 농축산업계 피해 파악 지원 및 복구대책 시행</li> <li>○ 국내 농산물 수급불안 대책 마련 및 실행</li> <li>○ 오염 농산물의 유통 차단 대책 마련 및 실행</li> <li>○ 비오염 농축산물의 유통·소비 촉진 대책 마련 및 실행</li> </ul>
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ul><li>○ 방사능 오염 농축산물 처리 관련 지술 보급</li><li>○ 오염 농경지 제염 등 복원관련 기술 보급</li></ul>

# VI. 기관대응수칙

기관대응수칙은 매뉴얼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재난유형별 주요 단계에서 지휘부와 핵심 대응부서가 판단하고 조치할 행동절차를 규정

### 유형 : 원전인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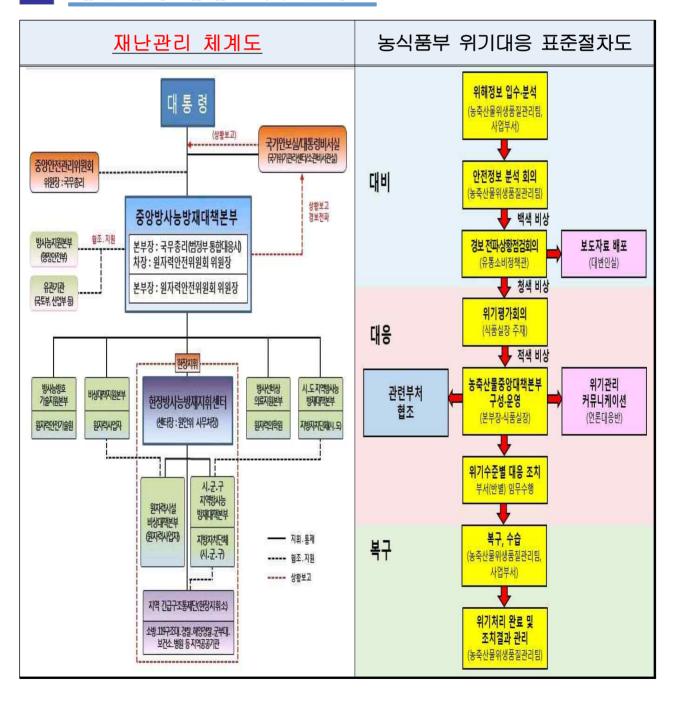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관리번호 시호째난19

관련 매뉴얼

○ 「원전안전분야(방사능누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원안위) ○「원전안전분야(방사능 누출)」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국민안전처, 국방부, 보 건복지부,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 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 1 재난관리 체계도 및 절차도



# 2 농림축산식품부 대응 프로세스

초기 대응 부서 (농축산 물위생 품질관 리팀)	<ul> <li>초기상황 파악</li> <li>사고정보 수집 및 현황 파악</li> <li>상황관리반 편성 및 운영</li> <li>농림축산식품부 상황점검회의 운영</li> <li>장·차관, 실·국장 보고</li> <li>관계기관 협의 및 대책회의 개최</li> <li>농관원, 농진청 등 유관기관 전파</li> <li>상황보고체계 유지(대통령비서실, 총리실 등)</li> </ul>
장 · 차 관	● 사고 상황 확인(보고: 유통소비정책관)  - 피해 상황, 예상 피해 범위, 농축산물 안전 동향 등 종합 보고  ● 조치사항 지시  - 농업인, 농축산물 안전관리 철저 지시
실·국장	● <b>상황점검회의 주재</b> - 방사능 누출사고 크기, 위해정보에 따른 조

발령 (상황접수 및 보고ㆍ전파

- 고정보 수집 및 현황 파악
- 황관리반 편성 및 운영
- 림축산식품부 상황점검회의 운영
- · 차관. 실 · 국장 보고
- 계기관 혐의 및 대책회의 개최
- 관원. 농진청 등 유관기관 전파
- 황보고체계 유지(대통령비서실, 총리실 등)

재난발생 단계

관련 부서

방사능 누출사고 크기. 위해정보에 따른 조 치의 시급성 여부 판단, 사고 인근지역 농산 물 안전관리 검토

- 농축산물 수급동향 모니터링 (유통정책과)
- 방사능 오염 취약 농산물 생산동향 및 오영 발생 시 수급대책 검토(원예 경영·산업과)
- 방사능 오염 취약 축산물 생산동향 및 오염 발생시 수급대책 검토 등(축산경영과)
- ●국내 농산물 수출 영향 분석(수출진흥과)
- 방사능 누출에 대한 각 국의 검역조치 모니터 링(검역정책과)
- 언론매체 취재동향 및 온라인 논의 동향 관찰 강화 등(대변인실)

발령

**\** 

재난발생 단계 (상황접수 및 보고·전파)

- 위기상황 확인
- 위기평가회의 개최
- ●소속기관,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총괄
- 안전성 검사결과 종합 및 관리대책 강구
- 관계기관. 유관기관. 소속기관 전파·협의
- 상황보고체계 유지 강화

● 사고 상황 확인(보고 : 차관보)

- 국내 피해 상황 및 대응 조치, 피해 복구 및 사후대책 등
- 조치사항 지시
- 농업인, 농축산물 안전관리 철저 지시
-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등 총력 대응

● 위기평가회의 주재

- 정보의 심각성. 예상피해 범위. 확산 가능성. 농업인 등 주요 이해 관계자 동향 등을 종합 ■ 검토하고 대응방안 논의
- 농축산물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위생품질관 리팀 등)
-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강화(유통·경영·산업·축 산경영·식량산업)
- ●비오염 농축산물 소비촉진대책 추진(유통)
- 피해 농·축산인 지원 및 경영안정대책 검토(경 영·산업·축산경영·식량산업)
- 방사능 누출사고 장기화 및 국내산 농산물 오 염에 따른 수출 영향 파악 및 조치(수출진흥과)
- 각 국 검역조치 모니터링 강화(검역정책과)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가동(대변인)

적색 재난발생 단계 발령 (상황접수 및 보고ㆍ전파)

- 위기상황 확인
-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운영·가동 - 5개반 소집. 일일 상황 및 대책 종합
- ●소속기관,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총괄
- 안전성 검사결과 종합 및 관리대책 추진
- ●관계기관, 유관기관, 소속기관 전파·협의 및 대책회의 강화
- 상황보고체계 유지 강화
- 사고 상황 및 피해 규모 확인(보고:차관보)
- 중앙안전대책본부 대응 상황. 피해 상황. 대응 조치, 복구 및 사후대책 등
- 조치사항 지시

\lnot/

- 농업인, 농축산물 2차 피해 방지 지시
-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 등 총력 대응
-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주재 (본부장: 차관보, 부본부장: 유통국장)
- 5개반 별 상황 및 조치 점검 강화
- 국민건강 보호 농업인 피해예방 및 신속 복구 대응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운영 강화
- 방사능 오염 농축산물 출하 제한 조치(위생품질관 리팀 등)
-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 강화(유통·경영·산업·축산 경영·식량산업)
- 농축산물 시장기능 회복대책 전면 시행(유통)
- 피해 농·축산인 지원 및 경영안정대책 추진(경영· 산업·축산경영·식량산업)
- 방사능 누출사고 장기화 및 국내산 농산물 오염 에 따른 수출 영향 파악 및 조치(수출진흥과)
- 우리나라 조치사항 국제기구 통보(검역)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운영 강화(대변인)

#### 복구 단계

● 사고 상황 분석 총괄

**4/** 

\_/

- 농축산 분야 복구대책 수립 총괄
- 방사능오염 농산물 폐기 등 처리 지원
- 사고 이후 인근지역 농산물 안전관리 총괄
- 범정부 차원의 피해조사위원회 조사활동 지원
- 최종 상황 및 피해 규모 확인(보고:차관보)
- 농축산분야 피해복구계획 수립
- 오염 농경지 제염. 방사능 오염 농축산 물의 처리 지원 등
- 비오염 농축산물 유통·소비 촉진 대책 마려
-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주재 (본부장: 차관보, 부본부장: 유통국장)
- 5개반 별 수습 및 복구 대책 마련·이행
- 농업인의 손해배상 소송 지원책 마련·이행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센터 운영 강화
- ●사고 상황 및 피해 정도 분석(유통·경영·산 업·식량·축산)
- 농축산업계 피해 파악 지원 및 복구대책 시 행(유통·경영·산업·식량·축산)
- ●비오염 농축산물 소비 촉진 및 시장기능 회 복대책 강구(유통·경영·산업·식량·축산)
- ●국내 농축산물 수급 불안 시 해외 농산물 도입방안 시행(농업통상과)
- 방사능 오염 농경지 제염 및 오염 농축산물 의 처리 지원(유통·경영·산업·식량·축산)

# 3 관련부서·소속기관별 협업기능

기능	① 재난상황관리 농축산물 안전관리	② 농축산물 수급 관리	③ 농산물 생산관리	④ 축산물 관리
주관 부서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유통정책과 농업통상과	원예경영과 원예산업과 식량산업과	축산경영과
	<ul> <li>상황점검회의, 위기평가회의, 농축산물중 앙사고대책본부 등 위기경보 단계별 대응 기구 운영</li> </ul>	·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가동시 '수급 반' 담당	·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가동시 '생산 관리반'참여	·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가동시 '총괄 반', '조사반' 참여
주요	• 주관기관·유관기관·소속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유지	∘ 농축산물 생산·소비·가격 등 수급동향 모 니터링	<ul><li>방사능 오염 취약 품목의 생산 동향 및</li><li>오염 발생 시 수급대책 마련</li></ul>	<ul><li>방사능 오염 취약 품목의 생산 동향 및 오염발생 시 수급대책 마련</li></ul>
업무	<ul><li>방사능 오염 우려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li><li>조사 계획 수립 및 관리대책 총괄</li></ul>	<ul><li>비오염 농축산물 소비촉진방안 등 수급안 정대책 수립·추진</li></ul>	<ul><li>방사능검사 부적합 품목에 대한 출하제한 대책 마련</li></ul>	∘ 방사능검사 부적합 품목에 대한 출하제한 대책 마련
		<ul><li>피해 농업인·업계 지원대책 수립 및 시장 기능 회복대책 마련</li></ul>	• 피해 농업인 지원 및 경영안정대책 마련	· 피해 축산인 지원 및 경영안정대책 마련
		• 국내 수급 불안 시 해외 농산물 도입 방안		• 사료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검사

기능	⑤ 해외 대응	⑥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⑦ 농축산물 안전 기술지원	⑧ 농산물 안전성 조사
주관 부서	수출진흥과 검역정책과	대변인실	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가동시 '수급 반'참여	<ul><li>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가동시 '위기 관리 커뮤니케이션센터' 운영</li></ul>	<ul><li>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가동시 '기술 지원반' 담당</li></ul>	<ul><li>농축산물 중앙사고대책본부 가동시 '조사 반' 담당 및 '기술지원반' 참여</li></ul>
주요	<ul><li>방사능 사고로 인한 국내 농산물 수출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li></ul>	· 사고관련 동향 분석 및 언론대응	· 국내외 농축산물 안전정보 동향 파악	。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ERNet) 데이터 모니터링
업무	· 국내 원전사고에 대한 해외 검역 및 위생 동향 파악 및 전파	· 온라인 정보수집 및 대응	∘ 방사능 물질 오염 최소화를 위한 영농관 리기법 연구·보급	<ul><li>국내 농산물 방사능 안전성조사 실시 및 유관기관(식약처, 지자체 등) 결과 통보</li></ul>
			∘ 방사능 오염 농축산물 관리 해외사례 연 구·보급	· 방사능 오염 농산물의 폐기 등 행정 지도

# 4 관계기관 주요 임무(방사능누출)

H -1	초기 대응 단계 • 예비현장지휘센터	중대본 운영ㆍ현장지휘센터	스스 ㅂㄱ리게
부 처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시	방사선 청색 • 적색비상 발령시	수습·복구단계
원자력 안전위원회	<ul> <li>비상발령보고 및 상황 전파, 대책회의 개최</li> <li>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및 예비현장지휘센터 발족・운영</li> <li>유관기관 초기 비상대응조직 발족 및 상황 관리 지시</li> <li>위기징후 변화양상 모니터링, 연합정보센터 대응활동 지원</li> <li>IAEA 조기통보 및 인접국 통보</li> <li>현장지휘센터 파견요원 긴급이송 헬기지원 "준비" 요청</li> </ul>	<ul> <li>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li> <li>비상상황 대응 총괄 조정, 현장 대응활동 지휘・통제</li> <li>유관기관 상황전파 및 협조 요청, 연합정보센터 운영 언론대응 일원화, 재난방송 및 재난문자 요청</li> <li>긴급 주민보호조치(대피・소개・음식물섭취제한・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등)</li> <li>육・해・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방사선비상진료소 운영</li> <li>방사능재난 발생 선포・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li> <li>IAEA 조기통보 및 인접국 통보, 정보제공 재난홈페이지 개설</li> <li>장기 상황 관리방안 수립 등</li> </ul>	<ul> <li>사고의 수습 및 복구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li> <li>합동조사위원회 설치</li> <li>방사능재난 상황 조사</li> <li>재난조사, 피해보상대책, 국가 차원의 방사능재난 사후대책 보고</li> <li>외국의 사고 수습 및 복구기술 지원요청(필요시)</li> <li>원자력시설 및 비상계획구역내 복구 완료시 수습 및 복구완료 선언</li> <li>지자체,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주민복귀 여부를 결정</li> <li>주민복귀를 위한 상황정보 수집 및 평가</li> </ul>
국민안전처	<ul> <li>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li> <li>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li> <li>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헬기 지원 준비</li> </ul>	● 방사능지원본부 운영(필요시) ● 재난온라인방송 및 재난문자 전송 지원 ●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현장 파견 ● 해당지역 어로행위 및 선박운항 통제 ● 해양방사능 탐사 지원(경비정 등), 공중방사능 탐사 헬기지원 ● 피해지역 인력 및 재정지원 방안 강구 ●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대응활동 지원(긴급 주민소개 차량, 선박, 헬기 등) ■ 특수구조대(해경) 가동 긴급구조(필요시) 등	■ 상황 모니터링 강화 ■ 피해지역 인력, 장비 및 재정지원 방안 강구 ■ 방사능 오염피해 공동조사 참여
국방부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ul> <li>주민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군, 예비군) 및 장비 지원</li> <li>방사능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li> <li>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li> </ul>	
교육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구호시설(학교) 지정 및 운영 관련 협조·지원 ■피해예상지역 학생 대피 관련 협조·지원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학사 일정 조정 ■학교·연구기관 등의 언론대응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	
보건복지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현장 응급의료 지원(필요시) ■ 지역 안정화를 위한 지역 주민 심리 개입 ■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현장 파견	▪ 지역주민 및 대국민 심리안정화 지원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원자력연구기관 활용 인력・장비 및 상황분석 지원 ■ 유언비어 차단, 언론 홍보활동 지원 ■ 국내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 •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 유언비어 차단, 언론 홍보활동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국내 생산 농산물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 관리 준비 ■ 국내 생산 농측산물 등에 대한 방호 조치 ■ 국내 생산 농축산물 등의 방사능오염에 관한 통제	
해양수산부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ul> <li>국내 생산(유통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li> <li>항만 방사능오염 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li> <li>어항 및 수산시설 보호</li> <li>피해지역 생산 수산물(유통전)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및출하 제한</li> </ul>	

на	초기 대응 단계 • 예비현장지휘센터	중대본 운영 • 현장지휘센터	스스 비그리게	
부 처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시	방사선 청색・적색비상 발령시	수습·복구단계 	
환경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ul> <li>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준비</li> <li>방사능오염에 의한 급수 중단 대비 비상급수체계 확보</li> <li>환경매체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li> <li>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몀 관리・검사 실시</li> </ul>		
국토교통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ul> <li>위기대응 관련 중장비 지원</li> <li>해당지역 항공기 운항통제 준비</li> <li>오염제거를 위한 중장비 지원</li> <li>필요시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li> <li>공항 방사능오염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li> <li>피해지역 항공기 운항 제한 실시</li> </ul>		
산업통상 자원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ul><li>●원전시설 복구 지원(소외전원 복구 관련 한전 지원 포함)</li><li>●전력 수급 지원</li><li>●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li></ul>		
문화체육 관광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ul> <li>언론대응 활동</li> <li>유언비어로 인한 사회혼란 대응</li> <li>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발생 내용 발표지원</li> <li>언론인터뷰가이드 제공 등 언론대응활동 지원</li> </ul>		
외교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ul><li>재난상황에 대한 국제간 정보 교환</li><li>국내 외국대사관에 대한 사고 상황 통보</li><li>외국의 지원협조에 대한 정부대응창구 운영</li></ul>		
기획재정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사고수습에 필요한 특별예산 지원		
행정자치부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지자체 단체장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식품의약품 안전처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ul> <li>□ 유통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li> <li>□ 관리 준비</li> <li>□ 피해지역의 유통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li> <li>오염 관리 • 검사 및 출하 제한</li> </ul>		
경찰청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ul> <li>특이상황 감시 및 치안 유지</li> <li>주민소개시 교통통제 및 방사능오염지역 출입통제 실시</li> <li>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지휘부 파견, 공중 방사능 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li> </ul>		
기상청	▪ 비상상황 접수 및 모니터링 강화	▪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정보 제공		
지방자하는체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 운영 ■ 비상상황 접수 및 관계기관 통보 ■ 비상상황 모니터링 강화	<ul> <li>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확대 운영</li> <li>주민보호조치 준비 점검 및 시행(수송수단 확보, 대피・소개, 갑상선방호약품배포 등)</li> <li>유관기관 협조 요청(주민소개시 교통통제, 오염지역 출입통제, 긴급 구조구난, 의료지원, 인명구조 및 후송 등)</li> <li>이재민 수용 및 구호, 피해접수센터 운영</li> </ul>	▪ 중장기 피해복구계획 수립(시행계획, 실시계획)	

# 5 방사능재난 대응 비상연락망

#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전문기관 등

기 관		부 서	연 락 처	fax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02-770-4380~5	02-770-4887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		044-200-2218	044-200-2225
オーエの音	Q.	<sup>난</sup> 전환경정책관	044-200-2348	044-200-2367
		방재환경과	02-397-7351, 7358	02-397-7362
		원자력안전과	02-397-7287, 7288	02-397-7292
	월	성현장방재센터	054-740-3605,3627 (0‡)054-740-3653~4	054-740-3610
원자력안전	영	광현장방재센터	061-350-3605,3627 (0‡)061-350-3653~4	061-350-3610
위원회	울	진현장방재센터	054-780-3605,3627 (0‡)054-780-3653~4	054-780-3610
	고	리현장방재센터	051-720-3605,3607,3627 (0‡)051-720-3653	051-720-3610
	대	전현장방재센터	042-612-3605~7 (0‡)042-612-3605	042-612-3610
방송통신위원회	지	상파방송정책과	02-2110-1429	02-2110-0136
기획재정부		안전예산과	044-215-7431	044-215-8193
과학기술정보	비	상안전기획관실	02-2110-2167	02-2110-0278
통신부	원	자력연구개발과	02-2110-2465	02-2110-0296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044-203-6355, 6893	044-203-6971
외교부	원자력외교담당관실		02-2100-8437	02-2100-8498
	X	ㅐ난관리지원과	02-748-5768	02-748-5778
국방부	합참화생방과		02-748-3285	02-796-0369
70+	7	「기후통제실(야)	02-748-0305	02-748-0544
	국군	화생방방호사령부	02-2008-6119, 6314	02-3412-8064
		중앙재난안전 상황실장	044-205-1500	
		상황담당관	044-205-1540	
행정안전부	상황 근무자	상황담당관실 (사회재난)	044-205-1541	044-205-8894
		상황담당관실 (자연재난팀장)	044-205-1542	044-205-8890
		상황담당관실 (자연재난팀원)	044-205-1543	
	혼	한경재난대응 <b>과</b>	044-205-6176~7	044-205-8947
문화체육관광부		홍보정책과	044-203-2918	044-203-3483
농림축산식품부	·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044-201-2972	044-863-9219

기 관	부 서	연 락 처	fax
사어트사다의 비	원전산업관리과	044-203-5338	044-203-4768
산업통상자원부	종합상황실	044-203-4002~5	044-203-4790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주간)	044-202-2654	044-202-3989
エゼサベナ	당직실(야간)	044-202-2118	044-202-3910
환경부	수도정책과	044-201-7126	044-201-7130
여성가족부	운영지원과	02-2100-6047	02-2100-6480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93	044-201-5579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044-200-5287,5288	044-200-5299
식품의약품 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23	043-719-1710
경찰청	위기관리센터	02-3150-1641	02-3150-2661
O Z O	치안상황실(야)	02-3150-1234	02-3150-3657~8
기상청	예보정책과	02-2181-0493, 0502	02-847-4419
7166	국가기상센터	02-2181-0674~5	02-836-6755
해양경찰청	경비과	044-205-2441	044-205-8988
소방청	119구조과(주간)	044-205-7625	044-205-8986
	119종합상황실(야간)	044-205-1(~6)119	044-205-8877
해당 경찰서		112	
해당 소방서		119	
해당 해경안전서		122	
부산광역시	원자력안전과 (원자력안전팀)	051-888-3021~4	051-888-3019
부산 기장군	원전안전과	051-709-5472	051-709-5479
부산 해운대구	안전총괄과	051-749-6163,5	051-749-4939
부산 금정구	도시안전과	051-519-4653,4654	051-519-4969
울산광역시	원자력산업안전과	052-229-6020~5	052-229-6019
울산 울주군	원전정책과	052-204-1431~5	052-204-1419
울산 중구	안전총괄과	052-290-4052, 4062	052-290-4069
울산 남구	안전총괄과	052-226-3510,3515	052-226-5268
울산 동구	안전관리과	052-209-3671,3674	052-209-3669
울산 북구	안전정보과	052-241-7891,7895	052-241-7899
경상남도	재난대응과	055-211-2842,2846	055-211-2819
경남 양산시	안전총괄과	055-392-2831~2	055-392-2858
경상북도	원자력정책과	054-880-7661,7663	054-223-2145
경북 경주시	원자력정책과	054-760-7990~1	054-760-7488
경북 포항시	안전관리과	054-270-3342,3345	054-270-3340
경북 울진군	원전경제과	054-789-5890,5891	054-789-3257
경북 봉화군	안전건설과	054-679-6621~2	054-679-6479
강원도	비상기획과	033-249-3700,3029	033-249-2954
강원 삼척시	재난안전과	033-570-3895~7	033-570-3179

기	관		부 서	연 락 처	fax
전라님	<b>남도</b>		사회재난과	061-286-3050~3	061-286-4737
전남 영	전남 영광군		안전관리과	061-350-5731~3,5589	061-350-5122
전남 징	상성군		재난안전실	061-390-7018,7077	061-390-7588
전남 힏	h평군		안전건설과	061-320-1991,1995	061-320-3594
전남 무	- 안군		안전총괄과	061-450-5811,5818	061-450-5133
전라	북도		사회재난과	063-280-2711~2	063-280-2389
전북 고	<u>l</u> 창군		재난안전과	063-560-2659,2668	063-560-2679
전북 부	보안군		안전총괄과	063-580-4561~2	063-581-4288
대전광	역시		안전정책과	042-270-6020~3	042-270-4939
대전 유	P성구 -		안전총괄과	042-611-2208,2935	042-611-2553
+1 7 01	<b>-1</b> -1		대표	042-868-0000	-
한국원 안전기			상황실	042-861-4041	042-861-0971,4042
			당직실	042-868-0402	042-861-1700
한국원	자력		대표	042-860-9700	042-860-9849
통제기	술원	물리적방호실		080-002-0049	042-860-9849
한국원	자력	대표		02-970-2114	-
의학	원	24시간 사고접수		1522-2300	02-3399-5830
(방사선	비상	당직실		02-970-2121	02-970-2446
진료선	<u> </u>	의료지원본부 상황실		02-3399-5811~9	02-3399-5830
한국원	자려	대표		042-868-2000	
연구		<u>C</u>	원자력방재실	042-868-8813	042-868-2336
L: 1			당직실	042-868-8112	
			대표전화	054-704-2114	054-704-5199
	본사	주간	비상대책실	054-704-1140~78	054-704-1191~4
	L.1		방재대책팀	054-704-3330~6	054-704-3398
		야간	대표전화	054-704-2203	054-704-5695
한국		고리원	원전 대표 당직실	051-726-2114 051-726-3203	-
수력		한빛원전 대표 당직실		061-357-2114	
원자력	ы			061-357-3203	-
(주)	발	의 서 (	의저 대표 다지시	054-779-2114	
	전 소	월성원전 대표 당직실		054-779-3203	-
	· 公 ·	한울	원전 대표 당직실	054-785-2114 054-785-3203	-
		새울	원전 대표 당직실	052-715-1312 052-715-3203	052-715-2999
				032-713-3203	

# □ 방사선 비상진료기관

			연 락 처		
권 역	지 역	병 원 명	대 표	당직실/응급실	
		한국원자력의학원	02-970-2114	(당)02-970-2622 (응)02-970-2619, 2620, 2621	
중 부	서 울	서울대학교병원	1588-5700	(당)02-2072-2477 (응)02-2072-1182	
<b>О</b> Т	시 흐	국군수도병원	031-725-5114	(당)031-725-6010~1 (응)031-725-6119	
		한국수력원자력 방사선보건원	(성남/본원) 031-719-8780	(쌍문동/저선량연구팀) 02-998-9875	
	н п	부산대학교병원	051-240-7000	(당/의사)051-240-7067 (응)051-240-7501~2, 7088	
고 리	부 산	국군부산병원	051-730-5898	(당)051-730-5780 (응)051-730-0911	
		기장병원	051-723-0171	(응)051-723-2119	
월 성	대 구	경북대학교병원	1666-5114	(당/응급)053-200-6408 (응)053-200-5100,5200	
日 日 〇	네 T	국군대구병원	1688-9154	(당/행정반)053-750-5163 (응)053-750-1777	
중 부	대 전	국군대전병원	1688-9152	(당)042-878-4205 (응)042-878-0911, 4119	
		충남대학교병원	1599-7123	(응)042-280-8129	
한 빛	광 주	전남대학교병원	1899-0000	(당)062-220-5111~2 (응)062-220-5555, 6801	
고 리 /월 성	울 산	울산대학교병원	052-250-7000	(응)052-250-7610, 7612	
/월 성	2 2	동강병원	052-241-1114	(응)052-241-1190, 1290	
한 빛	전 주	전북대학교병원	1577-7877	(당)063-250-1115 (응)063-250-2222	
중 부 /제 주	제 주	제주한라병원	064-740-5000	(당/원무)064-740-5367 (응)064-740-5158~9	
고 리	진 주	경상대학교병원	055-750-8000	(당/행정)055-750-8119 (응)055-750-8282	
중 부	청 주	충북대학교병원	043-269-6114	(당)043-269-7727 (응)043-269-6991,6994,6888	
한 울	울 진	울진군의료원	054-785-7000	054-785-7119	
한 빛	함 평	국군함평병원	1688-9153	(당)061-390-5530 (응)061-324-0911	
한 빛	영 광	영광기독병원	061-350-3000	(당)061-350-3080 (응)061-350-3080, 3119	
	o d	영광종합병원	061-353-8000	(당)061-350-8138 (응)061-350-8129	
월 성	경 주	동국대학교경주병원	054-748-9300	(응)054-770-8119	
한 울 한 빛	강 릉	강릉동인병원	033-651-6161	(응)033-650-6105~6	
한 빛	고 창	고창종합병원	063-560-5600	(응)063-560-5555	

#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구 분	전화번호	Fax
고리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주) 051-720-3605, 3607, 3627 (야) 051-720-3653	051-720-3610
월성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054-740-3605, 06, 07	054-740-3610
영광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061-350-3605, 06, 07	061-350-3610
울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주) 054-780-3605, 3627 (야) 054-780-3653, 3654	054-780-3610
대전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042-612-3605, 06, 07	042-612-3610

<sup>※</sup> 방사선비상발령 시 각 실무반의 비상연락망은 각 센터별 현장조치행동매뉴얼 참조

# □ 농림축산식품부

주관기관(부서)	직 위	연 락 처	팩스
차 관 보	차관보	044-201-1031	044-868-5225
유통소비정책관	국장	044-201-2201	044-868-3965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팀장	044-201-2971	044-863-9219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사무관	044-201-2972	044-863-9219

# □ 방사능 재난 대응 부서·기관 비상연락망

부 서	담당업무	연 락 처
유통정책과(수급)	<ul><li>주요 농식품 물가 동향 분석</li><li>「농산물 수급조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li></ul>	044-201-2219~20
원예산업과(기획)	■ 채소·특작분야 재해 예방 및 대책추진에 관한 사항	044-201-2234~35
원예경영과(경영)	■ 과수분야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044-201-2252~53
(시설2)	■ 시설원예 재해업무에 관한 사항	044-201-2256, 59
식량산업과(농산)	■ 쌀 안정생산 및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	044-201-1832~33
(곡물생산)	• 국내산 밭식량작물 수급안정에 관한 업무	044-201-1835~36
축산경영과(경영기획)	▪ 축산물 수급업무 총괄	044-201-2334~35
축산환경자원과(사료)	▪ 사료 안전성 및 품질관리	044-201-2359~60
검역정책과(위생검역)	• 해외검역 및 위생동향 전파에 관한 사항	044-201-2080~81
수출진흥과(기획)	• 원전사고에 따른 국내 농산물 수출 영향 분석 및 대책마련	044-201-2172~73
농업통상과 (수입관리)	• 국내 수급불안 시 해외 농산물 도입 방안 마련	044-201-2056~57
대변인실(기획)	■ 외부 홍보협의체 대응 및 범부처 협력 홍보	044-201-1117~18
(온라인홍보팀)	■ 온라인, 오프라인 이슈동향 분석	044-201-1131~32
비상안전기획실	▪ 재난위기관리매뉴얼에 관한 사항	044-201-1474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 농산물 안전성 조사	054-429-4132~33
농업과학원 (화학물질안전과)	<ul><li>몽약을 제외한 유해물질의 사람·가축 및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연구</li><li>몽산물 유해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연구</li></ul>	063-238-3246

# Ⅷ. 부록

# ① 주관부서 등의 위기수준별 위기관리 활동(출처 : 표준매뉴얼)

#### 1. 예 방

가. 중 점

- ◆ 안전성 취약 등 위해요인 사전 분석 및 평가
- ◆ 원자력시설관련 지속적인 안전진단 실시
- ◆ 사고 예방 위한 국제기구(IAEA)와 협력체계 구축

#### 나. 세부 활동내용

- (1) 평시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 안전 운영에 주력
- (2) 원자력발전소·연구용원자로 및 관련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 전 검사 및 안전 진단 실시
  - (가) 주관·유관기관 및 관련기관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계 구축
  - (나) 원전 및 관련시설에 관한 이슈 추적 및 모니터링
  - (다) 사고원인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3)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대상 환경방사능 감시계획 수립 및 이행
  - (가) 환경방사능 감시를 위한 인력·장비 구비
  - (나) 정기 또는 수시로 환경방사능 탐사 및 평가
- (4) 사고 예방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체계 구축
  - (가) 국제적 원전 사고 지속 모니터링 및 관련정보 공유
  - (나) 국제적 원전 사고 관련자료 축적 및 원전 안전검사에 반영

- (5) 방사능 방재교육 수립 및 실시
  - (가) 방재 교육대상자 선정 및 신규·보수 방재 교육계획 수립
  - (나) 방사능 방재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기관의 시설·장비 구비
  - (다) 교육대상자 방재교육 실시
- (6) 각종 매체를 통한 위기상황 발생대비 행동요령 홍보
  - (가) 공중파, SNS 등의 매체 이용, 對국민 방송 소통
  - (나) 위기단계별 소통 업무 점검

# 다.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비고
원자력안전위원 회 (주관기관)	o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 안전검사 실시 o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및 검사 실시 o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조체계 구축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 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o 사고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사고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o 안전분야 정책관리·조정 o 관련 동향 종합 평가	
행정안전부	o 재난관리 교육·훈련 실시	
산업통상자원부	o 원자력발전소 시설 안전관리대책 수립 o 원자력발전소 시설에 대한 국내·외적 안전진단 실시 o 원전 관련 對국민 홍보 실시	
한국수력 원자력(주)	o 원자력발전소 안전 운영 및 관리 o 원자력발전소 시설 안전진단 실시 o 원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한국원자력 연구원	o 하나로 안전 운영 및 관리 o 하나로 시설 안전진단 실시 o 하나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원전 사고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o 원자력시설 관리에 대한 문제점 및 이슈 사전 발견 o 원자력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방사능 탐사 및 평가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o 원자력시설 상황정보 입수 및 분석 o 원자력시설의 물리적방호태세 점검	
한국원자력 의학원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및 1, 2차 비상진료기관 지정.관리 및 교육·훈련 실시	

# 라. 기관별 관리대상 지역·시설 목록

기 관 명	관리대상 목록
지방자치단체	o 관할 구역 원전 주변 주민 소개로 o 관할구역 비상 방송망 및 구호소 o 관할구역 환경방사선 감지기 o 관할구역 갑상선방호약품 및 방호물품 관리시설
한국수력 원자력(주)	o 국내 모든 원전 및 주변시설 일체 o 원전주변 비상경보방송망 o 원전주변 환경방사선 감시기
한국원자력 연구원	o 하나로 원자로 관련시설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전 국토 환경방사선감시기 o 지방방사능측정소
한국원자력 의학원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1,2차 비상진료기관
국방부	o 군 화생방 차량 및 지원 장비 일체
경찰청	o 교통통제소

#### 2. 대 비

#### 가. 중 점

- ◆ 사고 대비훈련 지속 시행
- ◆ 방사능 누출사고 대응 체계 및 시스템 구축·운영
- ◆ 재난대응 매뉴얼 지속적 현행화

#### 나. 세부 활동내용

- (1) 방사능 방재훈련계획 수립 및 실시
  - (가) 방재훈련 종류별 세부계획 수립 및 시나리오 개발
  - (나) 방재훈련의 실시 및 평가
- (2)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운영
  - (가) 방사능 방재대책 수립 및 유지
  - (나)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중심의 신속한 대응 준비
  - (다) 정부 차원의 비상자원 가용체계 구축
  - (라) 효율적 홍보 커뮤니케이션 체계 등 방사능 누출사고 대 비 신속·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가동
- (3)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신속・체계적 대응시스템 구축・가동
  - (가) 지자체 전문기관, 유관부처, 원자력사업자 간 유기적인 대응 시스템 구축·운영

- (나)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AtomCARE) 구축·유지 운영
- (다) 비상대응정보교환시스템(ERIX) 구축·유지
- (라) 원자력발전소 및 연구용원자로 주변의 거주자 옥내대피·소개 방안 수립
- (4) 원전사고로 인한 제2차 위기상황 대비방안 마련
  - (가) 2차 피해 억제 및 원인 규명을 위한 전문가 중심 TF 구성, 사전 역할 분장
  - (나) 대응기능 계속 수행을 위한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 (다) 유·무선 및 위성통신 등 신속·정확한 비상 연락체계 구축
  - (라) 재난 구조 인력 및 장비 증강
  - (마) 원전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치료장비 및 대피 지원인력 확보
  - (바) 원전사고·고장, 지진, 태풍, 화재 등 위기징후 감시 목록에 의한 감시 및 위기징후 발생 시 평가 보고
- (5) 비상단계별 대응 활동 전개
  - (가) 비상단계별 상황 모니터링
  - (나) 주관기관 중심 대책본부 가동 및 초동대응 조치 시행

# 다. 긴급지원체계의 사전점검 및 보강

구 분	내용
긴급 구호활동	인력 및 장비·물자의 비축
위험물 대책	원자력시설 내 위험.폭발물질 보관시설 점검.관리
경비 및 치안유지	방사능 피해지역의 경비 및 치안 유지계획, 출입인원 통제 및 범죄예방 활동계획 등
소개계획	집결지 및 소개로 평시 지정.관리
이재민 대책	구호소 지정 및 관리
구조구급계획	피해지역 구조, 구급 실시 및 부상자 후송 등
의료구호계획	방사선비상진료기관 지정.관리, 현장방사선비상진료센터(현장방사선비상진료소 등), 현장 의료구호소 설치,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의 확보
식수 등의 공급계획	비상급수, 수송 및 공급
교통대책 및 긴급수송계획	소개로 및 수송차량, 교통통제소 사전지정
응급복구 계획	필요인력, 장비의 지정·비축
학생안전대책	학생 옥내대피.소개 대책 및 휴교, 등하교시간 조정 등
홍보대책	재난방송·SMS 등을 통한 신속전파 및 정보제공 창구의 단일화

# 라.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비고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o 안전분야 정책관리.조정 o 관련 동향 종합 평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원안위 소관 매뉴얼 수립·점검 o 주민보호용 갑상선방호약품 수급 o 원자력시설 안전점검 및 전국토 환경방사선 감시	
행정안전부	o 매뉴얼 관리실태 점검·개선	
지방자치단체	o 지역 방사능방재계획, 매뉴얼 수립·시행 (안전취약계층 대피절차 등 포함) o 주민보호시설 지정·관리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자력연구원	o 24시간 상황 감시 o 시설 내 환경방사능 감시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AtomCARE) 운영 o 원자로 안전상태 감시	
한국원자력 의학원	o 방사선비상진료 태세 확인 및 점검	

#### 3. 대 응

#### 가. 중 점

- ◆ 신속·정확한 의사결정 및 협조 지원 체계 가동
- ◆ 인명피해 및 방사능 피폭 최소화
- ◆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대국민 심리안정화 방안 시행

#### 나. 세부 활동내용

- (1) 비상단계에 따른 분야별・기관별 비상대응조직 발족
- (2) 협조 체계 가동을 위한 기관간 비상요원 파견
- (3) 全통신 수단을 사용한 보고・지시・통보 체계 가동
- (4) 연합정보센터를 통한 투명하고 일관된 대국민 정보 제공
- (5) 비상단계별 상황 전파, 주민보호조치 결정ㆍ이행
- (6) 오염지역 출입통제·주변지역 교통통제·치안 유지
- (7) 환경방사선(능) 탐사·분석·평가, 오염관리
- (8) 방사선 상해자 및 일반 환자에 대한 방사선비상의료
- (9) 원자력 사고 완화 및 수습, 종사자 보호

### 다. 기관별 임무 • 역할

### [1] 백색비상

① 징후 및 기관별 주요 임무/역할

구 분	내용
징후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지만 안전 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상황 발생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o 위기정보·상황 종합 o 위기관리 활동 모니터링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비상발령보고, 상황 전파 o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 및 예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 o 유관기관 초기 비상대응조직 발족 및 상황 관리 지시 o 위기징후 변화양상 모니터링, 연합정보센터 대응활동 지원 o 현장지휘센터 파견요원 긴급이송 헬기지원 "준비" 요청
행정안전부	o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o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국방부	시지나 나 바레지하네다 이어하고 말 그것 만나 가신을
경찰청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준비 ← 원안위가 백색단계에서 준비요청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o 예비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상황실, 연합정보센터) 발족.운영 o 비상상황 파악, 관계기관 통보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o 소내 비상대응시설 운영(연구원 :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o 사고 확대 방지 및 원인 조사 o 시설 내외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예비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운영 o 전문가단 현장 파견 o 환경방사능감시 활동 강화 o 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AtomCARE) 운영 확대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o 핵물질의 운반에 대한 방호조치 강화
한국원자력 의학원	o 예비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운영 o 의료지원반 및 현장의료지원단 현장 파견 준비

② 주요 조치내용(주관기관)

#### 비상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 비상상황 접수
- □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
  -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방사선 백색비상 발령을 보고받은 지역사무 소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속한 상황보고·전파 후 필요시 대책회의 개최
    - 보고 :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 처장,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 통보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 소속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 력의학원 및 원자력사업자 등
    - 전파내용 : 방사선비상의 종류, 사고원인 및 상황, 주요 현장 대응조치 등
    -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영상회의로 개최 가능

# 사고대응조직 설치 가동 □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실장 : 방사선방재국장) 및 예비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예비센터장 : 지역사무소장) 운영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예비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 운영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예비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 운영 □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응조직 발족 운영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 산건조사 및 상황수습

-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장은 예비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에 환경 방사능 감시 강화 지시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사건 발생 시설의 물리적 방호태세를 지속 점검하고 이상징후 발생시 중앙통제상황실에 보고

#### 방사선비상 해제 및 후속조치

		해제	결정	및	전파
--	--	----	----	---	----

□ 비상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

□ 환경방사능 감시 및 물리적 방호 강화

# [2] <mark>청색비상</mark>

① 정후 및 기관별 주요 임무/역할

구 분	내 <del>용</del>
징 후	o 사고를 일으키거나 확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안전계통에 심각한 기능 상실 상황 발생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o 정부 대응방향 제시 o 비상대책 시행 등 범정부 대응활동 조정 o 정부 대응활동 종합점검.평가 및 협의.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기관)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및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발족.운영 o 상황 대응 총괄 조정 및 현장 대응활동 지휘·통제 o 유관기관 상황 전파 및 협조 요청 o 연합정보센터를 통한 언론대응 일원화 및 재난방송 협조 요청 o 안전취약계층 사전소개 건의 검토.결정
유관기관 (공통)	o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실무반 인원 파견 - (해당기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 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실무반 인원 파견 - (해당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당지역 군부대·경찰청·교육청·기상청·해경서·소방서, 지자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자력사업자 등 * 단, 현장지휘센터의 행동매뉴얼에 따라 실무반 신축 편성
방송통신 위원회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구 분	내 <del>용</del>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o 원자력 연구기관 인력·장비 활용 지원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o 연구용원자로 복구 지원
교육부 (교육청 포함)	o 구호시설(학교) 지정·운영 관련 협조·지원 o 학생 대피 관련 협조·지원
외교부	o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간 정보교환 지원 o 외국인 사상자 발생 시 관련상황 전달
국방부 (군부대 포함)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행정안전부	o 지자체 단체장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 ○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 ○ 방사능지원본부 운영(필요시) ○ 주관기관 위기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협조)사항을 유관부서 및 지자체에 통보 ○ 지자체 방사선비상 경보방송 지원 (비상경보방송시설・민방위방송 활용) ○ 재난온라인방송 및 재난문자전송지원(원안위 요청시)
문화체육관광부	o 언론 대응활동 지원 o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혼란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o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산업통상자원부	o 원전시설 복구 지원(소외전원 복구 관련 한국전력 협조·지원 포함) o 공산품에 대한 방사선오염 검사 관리 준비
보건복지부	o 필요시 현장응급의료 지원 등
환경부	o 먹는 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준비
국토교통부	o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 관련사항 지원 o 위기대응 관련 중장비 지원 o 해당지역 항공기 운항 통제 준비
해양수산부	o 국내 생산(유통전)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구 분	내 <del>용</del>
식품의약품안전처	o 유통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관리 준비
경찰청	o 특이상황 감시, 치안유지 o 교통·출입통제 준비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 한 헬기 지원
기상청	o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정보 제공 준비 o 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항공기 등) 준비
해양경찰청	o 해당지역 어로행위 및 선박 운항 통제 준비 o 해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경비정 등) 준비
소방청	o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준비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o 방사선 감시활동 지원 및 협조 o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인원파견 및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o 구호소 주민 불안 감소를 위한 실시간위성중계(SNG) 차량 지원 준비
지방자치단체	o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확대.운영 o 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o 안전취약계층 사전소개 검토·건의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원자력연구원	o 비상대책본부 발족·운영 o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 환경방사능 감시 강화 o 사고확대방지, 원인 조사, 제염활동 및 응급조치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운영(원전의 경우) o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현장기술지원단 파견 o 환경방사능 감시 지원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o 상황에 따라 핵물질 운반제한 유도
한국원자력의학원	o 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운영 o 의료지원반 및 현장의료지원단 현장 파견

#### 비상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 비상상황 접수
- □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
  -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방사선 청색비상 발령을 보고받은 예비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은 방사능중앙통제상황실로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 후 대책회의 개최
    - 보고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사무처장,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 통보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 소속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한국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및 원자력사업자 등
    - 전파내용 ① 방사선비상의 종류, 사고 상황, 주요 대응조치 등
      - ②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 소속 중앙부처의 연락관 및 현장파견관 파견 요청(→ 중앙본부 및 현장지휘센터)
    -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영상회의로 개최 가능

#### 사고대응조직 설치 가동

-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 원안위 위원장) 및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센터장 : 원안위 사무처장) 운영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발족 운영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능비상의료지원본부 발족 운영
□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발족 운영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강화
현장 수습활동
□ 사건조사 및 상황수습
□ 지역주민 사고 상황 전파
○ 원자력안전위원회 긴급재난문자, 긴급재난방송 송출 요청
○ 지역경보체계를 통한 지역방재대책본부 주관 상황전파
○ 원자력시설주변 원자력 사업자 비상경보방송망
□ 연합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방사선비상 해제 및 후속조치
□ 해제 결정 및 전파
□ 비상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

# (3) <mark>적색비상</mark>

① 기관별 주요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초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초기·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o 관련 동향 확인·평가 및 부처별 대응방안 협의·조정 o 방사능 누출 사고에 따른 재난 선포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사항 심의 o 정부 대응활동 협의·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방재 대책본부)	<ul> <li>○ 방사능 재난 총괄 조정 및 현장대응 활동 지휘・통제</li> <li>○ 국가 환경 방사능 감시체계 운영</li> <li>○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연락체계 구축</li> <li>○ 방사능 재난 발생 선포(선포기준 해당 시)</li> <li>※ 방사능 재난 발생 선포를 결정할 경우 지체없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li> <li>○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 연합정보센터의 언론대응 활동 지원</li> <li>○ 필요시 중앙정부 차원의 언론 대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조)</li> <li>○ 언론.홍보 적절성 지속 검토 및 유관부처와 협의</li> <li>※ 대국민 홍보, 오보 대응 등</li> <li>○ 언론대응 및 정확한 정보전파 등 대국민 정보제공</li> <li>○ 장기 상황 관리 방안 수립</li> <li>○ 방사능방호 관련 유관부처 기술지원 및 자문</li> </ul>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o 현장방재 대응조직 총괄 o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방사선 방호조치 o 합동방재대책협의회 자문을 받아 주민보호조치 등 주요 의사 결정 및 지역 방사능방재대책본부 시행 지시 - 예방적보호조치구역(PAZ) 지역 주민에 대한 즉시 소개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UPZ) 지역 등에 대한 긴급 주민보호조치(대피, 소개, 음식물섭취제한, 갑상선방호약품 복용 등) - 식료품, 음료품, 농산물 반출 및 소비 통제 - 위험(경계)구역 설정 및 통행 제한 등 o 對언론 창구인 연합정보센터 운영 강화 - 보도자료 배포(언론책임자가 수행) - 정기상황 발표(연합정보센터장) ※ 사고상황의 변동 내용과 대응활동 내용 주기적 제공 - 기자회견

구 분	내 용
방송통신위원회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기획재정부	o 사고수습에 필요한 특별예산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o 원자력연구기관 활용 인력.장비 및 상황 분석 지원 o 국내.외 긴급 통신수단 지원 o 대국민 홍보를 위한 재난방송 지원 o 연구용원자로 사고수습 및 시설복구 지원
교육부	o 구호시설 지정 협조 및 조정 o 피해예상지역 학생 대피 지원 o 피해예상지역에 대한 학사일정 조정 등 o 학교.연구기관 등의 언론대응활동 모니터링 및 관리 등
외교부	o 재난상황에 대한 국제간 정보교환 o 국내 외국 대사관에 대한 사고 상황 통보 o 외국의 지원 협조에 대한 정부 대응 창구 운영 o 외국인 사상자 발생 시 관련상황 전달
국방부	o 주민 보호 및 제염을 위한 인력(군, 예비군)/장비 지원 o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 지원 o 방사능 측정 및 평가를 위한 인력/장비 지원
행정안전부	<ul> <li>○ 지자체 관련부서 회의를 통한 지시사항 전달 및 지자체 요구사항 수렴</li> <li>○ 위기상황 모니터링 강화</li> <li>○ 방사능지원본부 운영(필요시)</li> <li>○ 피해지역 인력 및 재정지원 방안 강구</li> <li>○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지원</li> <li>- 주민행동요령 홍보 및 재난상황 전파(재난온라인방송, 재난문자전송 등)</li> <li>- 피해수습 전문인력 파견(특수재난협력관실, 민간전문가 등)</li> <li>- 방사능 오염지역(지자체) 동향 및 오염수습상황 관리</li> <li>○ 지자체 주민보호조치 대응활동 지원</li> <li>- 주민대피를 위한 긴급이송 차량・선박・헬기 등 투입 지원</li> <li>- 이재민 수용시설, 구호물품 등 재난구호물자 수급 등</li> </ul>
문화체육관광부	o 가용매체 활용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발생 내용 발표 지원 o 언론인터뷰가이드 제공 등 언론 대응활동 지원 o 유언비어로 인한 사회혼란 대응
농림축산식품부	o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에 대한 방호 조치 o 국내 생산(유통전) 농축산물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통제
산업통상자원부	o 원전사업자의 사고수습 및 시설복구 지원 o 전력 수급지원 o 공산품에 대한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구 분	내 용
보건복지부	o 필요시 현장응급의료 지원 등 o 지역 안정화를 위한 지역 주민 심리 개입 o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현장 파견 지원
환경부	o 방사능오염에 의한 급수 중단 대비 비상급수체계 확보 o 환경매체 방사능오염 검사 지원 o 먹는물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국토교통부	o 오염제거를 위한 중장비 지원 o 필요시 긴급물자 및 인력수송을 위한 교통수단 지원 o 공항 방사능오염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o 피해 지역 항공기 운항 제한 등
해양수산부	o 항만 방사능오염검사 및 방사선환경관리 지원 o 어항 및 수산시설보호 o 피해지역 생산 수산물(유통전)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출하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처	o 피해 지역의 유통 중인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오염 관리검사, 섭취제한 및 유통.소비 통제
경찰청	o 지역본부와 협력하여 주민보호조치 지원 및 주민통제 수행 - 주변지역에 대한 특이상황 감시, 치안유지 활동 . 주민소개 지역에서의 재산보호 . 소개 지역내 출입 제한조치 - 대규모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인력, 장비동원 . 경찰은 주민의 소개 이동에 따른 교통통제를 실시 . 이동경로 할당과 출발일정 조정 . 이동 중 고장 또는 사고차량의 처리
기상청	o 기상에 관한 기류분석 정보 제공 o 공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고정익 등)
해양경찰청	o 사고지역 해역에 대한 어로 금지, 선박운항 통제 o 특수구조대(해양) 가동 긴급구조(필요시) o 해양 환경방사능 탐사 지원(경비정 등)
소방청	o 중앙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및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o 특수구조대(119) 가동/ 인명 구조, 긴급 수송 o 방사성 오염 시설 제염/ 방사선 감시활동 지원 및 협조 o 구호소 주민 불안 감소를 위한 실시간위성중계(SNG) 차량 지원
광역단체 (시.도)	o 상황실 운영 및 상황 전파 o 민방위대 동원령 선포 o 주민소개 범위·방법 설정 및 수송대책 강구 o 오염지역 출입 통제를 위한 유관기관(군.경) 협조 요청

구 분	내 용
	o 유관기관 긴급 구조.구난 협조요청 o 유관기관 의료지원, 인명구조 및 후송 등 협조요청 o 국토교통부・경찰 등 교통대책 협조요청 o 시.도 단위 유관기관 협조요청 o 광역 주민보호조치 필요시 광역 차원의 구호소 운영 및 관할 시.군.구 지원 o 장기 주민보호조치 계획 수립.시행 o 공중 방사능감시를 위한 헬기지원(광역지자체 소방본부) 등
기초단체 (시.군.구)	o 상황실 운영 및 상황 전파 o 동원 민방위대원 임무 부여 o 주민소개 유도요원 배치 및 주민소개 조치 o 이재민 수용・구호 o 갑상선방호약품 배포 및 복용 조치 o 긴급 구조.구난 활동(유관기관 합동) o 출입통제소 및 교통통제소 설치.운용 o 시.군구 단위 유관기관 협조요청 o 지역대책본부에 피해접수 센터 설치 등 - 실종자 및 사상자 파악, 관련 정보 제공 등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사고 정보수집 - 운전상황 보고자료・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AtomCARE) 시스템 정보, 환경 방사선 감시 결과 o 사고 해석 - 사고원인, 사고정도・진행과정 예측 - 방사선 영향・환경 영향 o 평가 종합 - 방사성 물질 방출여부, 사고 수습대책 강구 - 시설의 위험도 평가 o 수습 및 안전대책 강구 o 방사선 관련 대국민 상담을 위한 전용 전화 및 홈페이지 운영 o 방사선방호 관련 기술자문단 운영
한국원자력의학원	o 사고 정보 수집 - 피폭환자 발생 예상 규모 등 o 국가방사선비상진료체계 가동 - 전국방사선비상진료기관 대응태세 유지 o 국민 심리안정화를 위한 상담 전용 전화 및 홈페이지 운영 o 심리안정화를 위한 전담팀 운영 지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o 비상대책본부 지속 가동 o 방사선비상계획 구역내 환경방사능 지속 감시 o 사고수습, 원인 조사, 제염활동 및 응급조치

## ② 주요 조치내용(주관기관)

#### 비상상황 접수 및 보고전파

- □ 비상상황 접수
- □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
  - 원자력사업자로부터 방사선 적색비상 발령을 보고받은 (예비)현장 방사능방재지휘센터장은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방사능중앙통제 상황실)로 보고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 후 대책회의 개최
    - 보고 : 국가안보실(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 원회 위원장·사무처장,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상황실)
    - 통보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위원 소속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한국원자력 의학원 및 원자력사업자 등
    - 전파내용 : 방사선비상의 종류, 사고 상황, 주요 대응조치 등
    - 국가위기관리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이 참석하는 회 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영상회의로 개최 가능

## 사고대응조직 운영 강화

-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본부장 : 원안위 위원장) 및 현장방사능 방재지휘센터(센터장 : 원안위 사무처장) 운영
-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 운영

□ 한국원자력의학원은 방사능비상의료지원본부 운영
□ 원자력사업자 비상대책본부 운영
□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 운영
현장 수습활동
□ 사건조사 및 상황수습
□ 지역주민 사고 상황 전파
○ 원자력안전위원회 긴급재난문자, 긴급재난방송 송출 요청
○ 지역경보체계를 통한 지역방재대책본부 주관 상황전파
○ 원자력시설주변 원자력 사업자 비상경보방송망
□ 연합정보센터 운영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
방사선비상 해제 및 후속조치
□ 해제 결정 및 전파
□ 비상상황 조치결과 종합정리 및 전파

## 4. 복 구

가. 중 점

- ◆ 중장기 방사능 영향 평가
- ◆ 조사위원회 구성, 사고원인 및 피해사항 조사
- ◆ 방사능 재난 사후대책의 수립
- ◆ 피해복구계획 수립

#### 나. 세부 활동내용

- (1) 주무부처·유관기관 중심의 조사위원회 구성
  - (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사업자·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 가동
  - (나) 방사능 사고 재난 원인 규명 및 피해상황 조사
- (2) 방사능 재난지역 소개주민 복귀 검토・추진
  - (가) 사고시설 상황추이, 방사성물질 추가 유출 가능성, 오염지역 제염 정도, 방사선영향평가 결과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 (나) 원자력안전위원회·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주 민복귀 여부 결정
- (3) 민·관·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계 운영
  - (가) 객관적 피해조사 등을 근거로 복구지원 계획 수립
  - (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중심으로 합동 복구지원단 운영

- (다) 원자력시설 사고 수습과 복구를 위한 중·장기 대책, 필 요한 조치와 지원방안 수립
- (라) 방재요원, 사고의 수습·복구활동에 대한 기록·관리 및 결과 보고
- (마) 국제원자력기구에 외국의 사고수습 및 복구기술 지원 사항에 대한 지원 요청
- (바)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사) 예비군·민방위대·군 병력 및 민간 자원봉사자 등에 의한 복구활동 지원
- (4) 사상자 치료 및 장례 등 대책 협의
  - (가) 병원별 공무원 배치, 사상자 가족 대상 창구역할 수행
  - (나) 합동분향소 설치, 개별·합동 장례 여부 검토
- (5)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문화체육관광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국민심리 안정화 도모 및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 제고
- (6)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보건복지부·지역대책본부 간 유기 적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주민 심리개입 등 지역 사회 안정화 추진

# 다. 기관별 임무·역할

구 분	내 용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o 위기 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o 재난상황 총괄 조정 및 후속 대응반 운영 o 재난안전관리 정책 총괄
대통령비서실 (소관비서관실)	o 정책대응 및 홍보방향 제시 o 후속대응 및 복구
국무조정실 (중앙안전 관리위원회)	o 원자력안전체계 정상화 방안 조정 o 사후 종합조사 및 대응활동 전반 평가 o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방사능 방재대책본부)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사업자 등과 함께 합동 조사위원회 설치 ○ 방사능재난 상황 조사 ○ 방사능재난 상황해제 선포 ○ 방사능재난 상황해제를 선포할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께 해제 사실 및 재난조사・피해보상대책・국가 차원의 방사능 재난 사후대책 보고 ○ 지자체.유관기관 간 협의를 통해 주민복귀 여부 결정 ○ 국민 심리 안정화를 위한 언론 홍보
원자력안전위원회 (현장방사능방재 지휘센터)	o 사고상황 분석 및 사태 진전 평가 - 방사능 방출 우려・방사능 감시 결과 등 o 사고의 수습 및 복구활동에 관한 계획 수립 o 외국의 사고 수습 및 복구 기술 지원 필요시 협조 요청 o 원자력시설 및 비상계획구역내 복구 완료시 수습 및 복구 완료 선언 o 주민 복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상황정보 수집 및 평가
행정안전부	o 상황 모니터링 강화 o 피해지역 인력 및 재정지원 방안 강구 o 방사능 오염피해 공동조사 참여
광역·기초단체 (시 • 도 및 시 • 군 • 구)	<ul> <li>○ 재난지역 중장기 방사능 영향 평가</li> <li>-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에서 지원</li> <li>○ 중장기 피해 복구계획 수립</li> <li>- 시행계획(시.도) 및 실시계획(시.군.구) 수립</li> <li>○ 주민 복귀를 위한 실시계획 수립</li> <li>- 복귀에 필요한 인력・물자・차량・시설 및 장비 동원</li> <li>○ 사후대책 수립</li> </ul>

구 분	내 용
유관부처	o 지역주민 및 대국민 심리 안정화 지원 o 유언비어 차단, 언론 홍보 활동 지원 o 복구 관련 예산·인력·장비 지원 등
한국원자력 안전기술원	o 방사능재난해제를 위한 기술검토 수행 o 주민복귀 등을 위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및 환경탐사 수행
한국원자력 통제기술원	o 원자력시설등에 대한 물리적방호태세 점검
한국원자력 의학원	o 피폭환자 관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연구원	o 방사능재난의 피해복구 조치 등을 포함한 사후대책 수립 o 원자력시설 복구조직 운영

# ②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1. 목표

○ 정부가 위기 시에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구조 활동을 지원하며, △피해자를 배려하는 한편, △위기관리 대응에 관한 정부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 있음

## 2. 기본 원칙

- 신속성: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신속히 국민에게 전 달해야 한다.
- 일관성: 정부의 메시지는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 개방성: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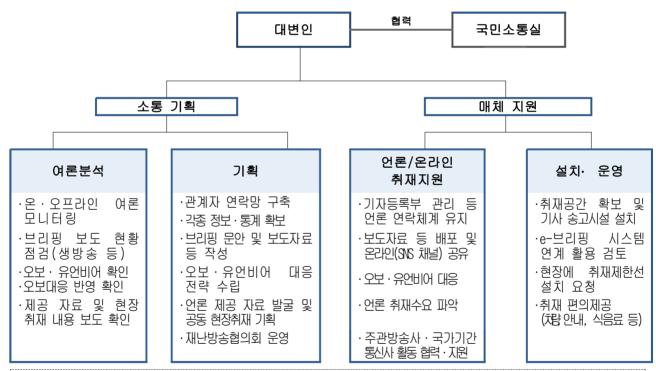
#### 3. 위기단계별 점검 사항

위기단계		점검사항	
위기 전 (pre-crisis)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에 따른 교육훈련 ○ 재난 예방 및 보도에 관한 언론 협조사항 숙지 ○ 언론사 및 기자 명단 보유	
		<ul><li>온, 오프라인 위기 징후 파악 모니터링 및 상황 분석</li></ul>	
위기(crisis)	위기발생	<ul> <li>이 위기관리(본부) 대책 회의</li> <li>- 위기 비상체제 가부 결정</li> <li>- 위기의 경중에 따라 위기관리 본부 설치 여부 결정</li> <li>- 응급임무 부여/비상근무 개시</li> </ul>	
		<ul><li>여론모니터링</li><li>오보, 유언비어 파악 및 브리핑 보도 현황 점검</li></ul>	
		ㅇ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소통센터 구성	

		○ 본부 및 현장에 취재지원센터(브리핑실) 설치
		○ 위기 언론대응 - 기자 연락 - 브리핑 준비 및 실시(관계부처 협의) - 보도자료 배포 - 재난방송협의회 운영 -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 설치 요청 - 주관방송사와 국가기간 통신사 활동 협력, 지원
		<ul><li>위기 온라인 미디어 대응</li><li>온라인 매체, 영향력자 파악 및 대응체계 구축</li></ul>
		○ 홍보 전문 부서(국민소통실)와 협력
	위기진행	ㅇ 언론의 정보 요구사항 파악
		○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 (관계부처 협의)
		ㅇ 오보 및 유언비어 대응
		○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구축 및 SNS 활용 정보 공유
		ㅇ 공동취재단 구성 및 언론 현장 취재지원
		○ 기관장, 전문가 등 브리핑 추진
		ㅇ 결과 브리핑
위기 후 (post-crisis)		<ul><li>이 위기 대응 평가 및 사례 자료집 발간</li><li>-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분석 및 평가</li><li>- 여론분석</li></ul>
		ㅇ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개선방안 마련
		<ul> <li>회복 프로그램</li> <li>상황관련 개선방안</li> <li>내부조직원 결속프로그램</li> <li>대외공중 회복프로그램</li> <li>언론사 및 주요 공중, 관계자에 감사서신 발송</li> </ul>

#### 4. 대변인 지정 및 위기관리 소통센터 역할

- ㅇ 대변인 지정
-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 본부장이 지정하는 자 (차관 또는 1급 이상 공무원)
- 현장 : 각급 통제단장이 지명하는 자(부기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급)
  \* 각 대변인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해 복수로 하며 1, 2, 3 순위를 정해 미리 정해둠
- ㅇ 대변인 지위와 역할
- 대외적으로 유일한 공식 창구
- 위기관련 모든 회의 참석, 상황을 장악하고 관련기관 간 메시지 조율
- 브리핑 등을 통해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홍보 활동 시행
  - 중앙방시능방재대책본부 대변인 : 현장 지원 및 범정부 대책 중심 브리핑
  - 현장 대변인 : 구조 등 수습활동에 대한 상황 중심 브리핑
- ㅇ 위기관리소통센터 활동



#### ※ 문체부 소통실 홍보지워 사항

- ○홍보협의 위해 현장지휘소-소통수석실-국조실-문체부(소통실) 간 연락체계 유 지
- ○홍보지원 사항: △ 초기 메시지 관리, △ 여론 모니터링 및 대응 협조, △ 보유매체 활용 및 범부처 온라인 소통 협력체계 가동 지원, △ 현장 의문사항 컨설팅, △ 필요시 취재지원 인력 파견, △ 취재제한선 조율 등

#### 5.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기준

#### 가.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되 정확한 정보에 근거해 브리핑하라

- 위기 시 초기 발표가 정부의 신뢰를 좌우한다.
- 첫 발표는 확인된 사실만을 발표 한다
- 확신이 없는 사안은 확인해서 알려주고, 추측성 답변이나 주관적 견해, 정보의 부분적 유출은 추후 불필요한 논란과 부정확한 보도를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삼간다.
- 감염병 등 진행 중인 위기의 경우 사태 추이 등을 예단하는 발언은 자제한다.
-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숫자 인용 등 데이터 오류는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과 언론의 신뢰를 잃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한다.
- 정확한 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재 파악된 바로는', '잠정', '몇 시 경', '회사 측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초기 사고원인, 피해상황에 대한 언급은 신중을 기한다.
- 주관적 판단이 결부된 추측성 답변, 예단하는 발언은 혼란을 부추기고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답변을 해야 할 경우, '구체적인 사고 원인, 피해상황은 현재 조사 중',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 중' 등의 표현을 사용한다.
- 문서로 작성한 발표 자료만 브리핑한다.
- 초기에 대변인이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정리 된 자료만을 기초로 발표하는 것이 워칙이다.

#### 나. 창구를 단일화하고 한목소리를 유지하라

○ 여러 채널을 통해 상호 모순되는 정보가 제공되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 정보는 반드시 공식 대변인을 통해 전달하고 필요시 대변인 승인 하에 관계자 인터뷰를 진행 한다
- ※. 대변인은 모든 회의에 참석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 상황을 장악
- 정부 내에서 통일된 입장을 정리하여 유지한다.
- 다른 조직에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삼간다.
- 다른 조직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 조율을 거쳐 발표하도록 한다.
- 여러 부처가 관련된 사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열거나 핫라인을 통해 입장을 사전 조율해야 한다.

#### 다. 언론은 최대한 준비한 뒤 대하라

- 현장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언론 및 온라인(소셜 미디어 여론) 모니터를 통해 여론·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해야 적절 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 전체 홍보 상황을 고려해 핵심 메시지, 정부 입장 등을 발표문으로 준비하고 언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미리 정리해 둔다.
-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 상에서 생겨나는 각종 루머, 비판, 유사 및 거짓 정보 등을 적시에 발견 정리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정확하게 초기 해명함으로써 소멸시키는 활동들을 지속해야 한다.(지속적인 공식 해명 자료 배포 등)
- 브리핑 등 대언론 설명 직전까지 현장 상황 등에 대한 최신 정보 및 관련 언론 보도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 라. 피해자 등 국민 정서를 항상 염두에 두고 발언, 행동하라

- 위기 시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적 공분을 낳는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구분한다.
- 정부 인사의 태도나 행동이 여론의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면서 진지하고 신중한 자세를 유지한다.

- 정부의 입장이 아닌 국민·언론 등 제 3자적 입장에서 메시지를 생각하고 냉정하게 평가한다.
-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신중히 결정 해야 한다.
- 사람 중심 시각에서 언론에 브리핑하고 설명한다.
- 인적 피해는 물적 피해에 앞서 언급하고, 인적 피해에 대해서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며 진솔한 애도와 위로를 표명한다.

#### 마. 언론 및 온라인(소셜 미디어)에 적극적으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라

- 기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면 제 3자의 정보에 의존하게 돼 오보 가능성이 높아진다.
- 기자들의 요구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알맞은 정보를 제공해 언론의 정보 수요를 충족시켜야한다.
- 상황이 허락하고 논란이 없는 사안에 관해서는 최선을 다해 협조하고, 안전·보안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취재가 어려운 경우에는 언론에 충분한 이해를 구한다.
- 사진·영상자료 등을 다양하게 확보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시로 제공한다.
- 공식 브리핑 자료들은 민감한 부분만을 제외하고, 정부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 전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 정부 발표 시 위기대응 조치가 진전되고 있음을 보이도록 한다.
-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조치가 상황에 맞춰 진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 바. 모든 정보를 공식화하라

○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는 지켜지기 어렵고, '노코멘트 (No Comment)'는 문제가 있거나 숨기고 있다는 암시를 준다.

○ 최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불가피하게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공개하여 국민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사. 오보 및 유언비어에는 즉각 대응하라

- 오보가 한번 보도되면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첫 오보에 대응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오보가 이어지며, 유언비어는 SNS, 댓글 등을 통해 교차 인용되며 급속히 확산되므로 정확한 정보공개 등을 통해 조기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온·오프라인 수시 모니터링으로 오보 및 유언비어를 신속하게 확인한다.
- 오보의 경우 담당 기자에게 사실을 설명하고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요청한다.
- 보도 해명자료를 즉시 배포하고 온라인에 해명 글을 게재한다.
- 명백한 오보임에도 정정보도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법적 대응을 검토한다.
- 위기 발생 시에는 언론의 오보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정기 브리핑, 보도자료, 온라인, 공식 소셜미디어 채널 등을 통해 정부의 해명 메시지들이 충분히 메시지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아. 위기관련 전문가와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라

- 위기 시 언론이 접촉하는 전문가 의견은 여론에 큰 영향을 미친다.
- 주요 전문가 및 관련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사건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한다.
- 주요 전문가 및 오피니언 리더 중심의 온라인 네트워크 연락망을 구축하여 실시간 정보를 교류하고 조언을 구한다.

#### 자. 외신기자 취재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 외신 보도는 대외적 국가 이미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내외신 보 도는 상호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 외신 담당관을 지정해 적극적으로 외신에 대한 취재 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 브리핑이나 현장 방문 풀(Pool) 구성 시 외신 기자를 포함한다.

## 차. 국민들의 주의와 행동이 요구되는 경우, 대응 요령에 대한 메 시지를 쉽고 간단하게 제작해 활용하라.

○ 감염병 확산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추가적인 사고를 막기 위하여 국민들의 주의나 행동 지침이 필요한 경우 이와 관련한 메시지나 홍보물은 최대한 간단 명료해야 한다.

#### 6. 브리핑 및 취재 지원 기준

#### 가. 브리핑 전 사전 리허설을 가져라

○ 언론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 언급을 삼가야 할 주제나 용어 등을 미리 파악해 둔다.

#### 나. 브리핑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라

○ 기자들의 위기 시 정보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정보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한다.

#### 다. 쉽고 정확한 용어를 사용하라

- 전문용어나 업계에서 통용되는 약어 사용을 삼가고 정부 발표를 직접 인용해 기사화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로 브리핑한다.
- 용어로 설명이 어려운 경우 그림·사진 및 영상 등을 함께 제공한다.

#### 라.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결론부터 말하라

○ 편집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둔다. 답변 내용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답변을 한 번 더 되풀이 한다.

#### 마. 질문에 얽매이지 마라

- 질문이 잘못된 사실이나 가정을 전제로 한 경우 전제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 확언 요구 등 답변이 곤란한 경우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등으로 언급한다.

#### 바. 인터뷰에서는 핵심 중심으로 간략히 말하라

- 방송 인터뷰의 경우 편집되지 않도록 10초 내에 짧게 답변하고 준비되지 않은 돌발 인터뷰는 삼간다.
- 한 번 잘못 언급한 말은 지속적으로 방송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 사. 위기대응 활동의 설명에 도움이 되는 인사와 자료를 활용하라

○ 현장 지휘책임자, 기관장 등의 브리핑이나 기자회견 기회를 마련하고, 관련 통계정보도 함께 제공한다.

#### 아. 알려질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지 마라

○ 부정적 사안이라 할지라도 알려질 사실이라면 숨기지 말고 선제 적으로 발표하고 전후 사정과 맥락을 충분하게 설명한다.

#### 자. 정직이 최우선이다

○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다는 평가가 이루 어질 수 있도록 매체에 솔직하고 겸손한 태도로 임한다.

#### 차. 미디어 트레이닝을 평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평소에 위기상황을 상정하여 기자들을 대상으로 한 브리핑 및 질의 응답 대응 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 카. 현장을 질서 있게 관리하라

- 언론의 보도 경쟁이 과열될 경우 공익과 무관한 자극적·선정적 뉴스가 양산되고 피해자들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
- 사고 현장에 접근제한선(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필요시 적절한 안내 조치를 취한다.
- 필요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풀(Pool) 기자들이 공보담당자의 인솔 하에 현장을 방문, 취재하도록 안내한다.

#### 타. 언론을 공평하게 대하라

○ 특정 매체에만 정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취재기자 리스트에 근거해 공평하게 정보를 제공해야한다.

#### 파. 복장은 정복이나 비상근무복을 착용하라

○ 위기상황이라는 점에서 대변인이 아닌 경우에도 브리핑, 기자회견 참석자는 이 워칙을 준수한다.

#### <붙임1>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사고현장 취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장소)

- o 사고현장에 가깝고 취재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 o 현장 대책본부 활동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된 곳
- o 충분한 공간(취재진 규모 예상) 확보
- (시점) 현장 사고대책본부 설치와 동시

## (기능)

- o 수시 상황브리핑 실시 및 보도자료 배포
- o 언론 상황파악 및 대응
- o 취재 송고시설 및 행정서비스 지원
- o 사고현장 안내 및 취재제한선 준수 협조

#### (취재지원팀의 배치)

- o 언론지원 담당
  - 기자등록부 관리 등 언론연락체계 유지
  - 보도자료 등 배포(이메일, 문자, SNS 등)
  - 언론 요구사항 파악(공동 현장취재 수요 파악 및 현장 안내 등)
- o 센터 설치·운영 담당
  - 브리핑실·기자실 등 취재공간 확보 및 기사송고시설 설치 \*\* 현장에서 송고시설 등 설치가 어려울 경우 가장 가까운 장소 및 시설 확보
  - 현장에 취재제한선(폴리스라인/포토라인) 설치 요청
  - 공동 현장취재 등 이동용 차량 준비, 취재진 편의 제공
    - ※. 구비물품 리스트: 마이크, 백드롭, 책걸상, 화이트보드, 발표대, 전화, TV, 컴퓨터, **인터넷** 등 송고 시설, 취재기자 등록부, 프린터, 팩스, 필기구, 지도, 음료수 등

## <붙임2>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메시지 작성 탬플릿

#### 메시지 작성 시 필수 고려 사항

타깃 (공중, 오디언스)	메시지의 목적	전달 방법(매체)
<ul><li>위기(사건)에 대한 관여 정도</li><li>인구통계적 특성</li><li>피해규모(정도)</li></ul>	<ul> <li>진행상황/사실 전달</li> <li>집회/연설 등</li> <li>현재 상황 설명</li> <li>루머대응</li> <li>미디어 응대</li> </ul>	<ul> <li>신문 보도자료</li> <li>홈페이지 게재</li> <li>대변인발표(TV, 현장발표)</li> <li>라디오</li> <li>소셜미디어</li> <li>기타(전화 응대 등)</li> </ul>

#### 메시지 기본 요소 (사과문, first response)

피해자에 대한 배려
사건개요 (6하 원칙) - 누가 - 언제 - 어디서 - 무엇을 - 어떻게
- 왜
사건의 원인 규명 노력 천명(구체적)
원상회복 노력 천명

# <붙임3> 위기 원인과 유형별 유의 사항

상황	사실(fact)	인식(perception)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ul> <li>○ 현 시대의 미디어 환경에서는 위기 발생 시 위기 상황을 회피하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능동적 대처가 필요</li> <li>-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예: 공중의 불확실성 감소, 타당성 검증 요구에 적극 대응 및 정보 공개)</li> <li>- 위기 前, 위기 申 그리고 위기 後등 각 단계 별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대응 커뮤니케이션</li> <li>- 내부 공중, 소속 부서들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통한 위기 해법 및 대안 모색</li> <li>- 조직 전체가 협력하여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기회 마련</li> <li>○ 특히 위기 발생 원인이 정부에 있어 정부의 책임이 높은 경우,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피해지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대응 필요</li> <li>- 신속한 사건 경위 전달</li> <li>- 사과 및 책임감 표현</li> <li>-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전달</li> <li>- 관계 개선 노력</li> <li>- 이미지 개선 노력</li> </ul>	○ 위기 발생의 원인이 정부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책임이 높다고 인식되는 경우, 보다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위기 대응 필요 - 위기를 회피하기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위기 돌파 혹은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으려는 노력 필요 - 적극적인 정보 공유도 중요. 위기원인 공개, 상황 공유 등 잘못 알려진 정보를 정확하게 정정 - 신속한 위기관리팀 구성운영 - 종합하면, 적극적인 정보제공 및 공유를 통한 언론의 오보와 유언비어 및 루머를 최소화 하고 호의적인 언론보도를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하며, 공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획득하도록 소통 ○ 분야별 전문가 그룹 등과 같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수있는 다양한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 방안 모색 필요 ○ 정부 신뢰 회복을 위한 상시 커뮤니 케이션 활동 모색 - 참여형 소통 방안 - 소셜 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 적극 활용
타 주체와 정부의 공동책임 인 경우	<ul> <li>타 주체와의 공동책임인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소통의 전략들 필요. 다만, 그 이외에 추가로 유의해야 할 부분은 타 주체와의 통일된 커뮤니케이션 필요</li> <li>단일화 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한 메시지 통일</li> <li>위기 단계별 상황에 부응하는 소통</li> <li>위기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상황분석 필요</li> </ul>	<ul> <li>○ 발생한 위기가 타 주체와의 공동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우,</li> <li>- 초기 위기 상황, '정보의 공백기'에서 적극적인 정보공유 필요</li> <li>- 불필요한 소문 확산을 막고, 초기 이슈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 위기 확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노력 필요</li> <li>○ 평상 시 신뢰감을 확고히 하는 평판관리 필요</li> </ul>

## ③ 방사선비상시 국민 행동요령

#### □ 정의

○ 방사선비상 : 방사성물질 또는 방사선이 누출되거나 누출될 우려가 있어 긴급한 대응조치가 필요한 상황(비상명칭은 방사능방재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종류	내 <del>용</del>
백색 비상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b>원자력시설의 건물 내에 국한</b>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주민보호조치 필요 없음)
청색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b>원자력시설의 부지 내에</b>
비상	<b>국한</b> 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주민보호조치 시행 준비)
적색	○ 방사성물질의 누출로 인한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시설의 부지 밖까지
비상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 사태(주민보호조치 시행)

- 방사능재난 : 방사선비상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및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으로 확대되어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
- 원자력시설 :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 핵물질 사용시설 등 원자력 이용과 관련된 시설

#### □ 방사선비상 상황을 알리는 방법

- 방사선 청색 또는 적색비상 발령 시 경보방송망, 텔레비전, 라디오, 차량가두방송, 행정안전부 재난문자 등을 통해 방사선비상 상황 알림
  - \*백색비상 때에는 방사성물질의 환경 누출 가능성이 없으므로 경보망 등을 통한 주민 상황통보는 없으며, 언론 등을 통해 대 국민 공개

## □ 방사선비상 상황시 행동요령

구분	행동요령
기업 공공기관 학교	<ul> <li>방사선 비상 시 각 기관 비상대응요원(관계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li> <li>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에어콘이나 환풍기 정지</li> <li>전화 또는 인터넷이 불통되어도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실내에서 TV·라 디오를 시청하여 비상시 행동 요령을 확인하고 전달되는 지시에 따름</li> </ul>
가정	<ul> <li>〈실내 대피 통보를 받은 경우〉</li> <li>외출중일 때는 즉시 귀가하거나 가까운 공공기관으로 이동</li> <li>항문과 출입문을 닫고 에어컨과 환풍기 정지</li> <li>장독이나 우물 등은 뚜껑을 닫음. 음식물은 랩을 씌우거나 밀봉</li> <li>손발과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음</li> <li>* 오염지역을 지나온 경우 입었던 옷과 신발은 비닐에 싸서 밀봉</li> <li>전화 또는 인터넷이 불통되어도 당황하지 말고 안전한 실내에서 TV·라디오를 시청하여 비상시 행동 요령을 확인하고 전달되는 지시에 따름</li> <li>〈안전지역(구호소) 대피(소개) 통보를 받은 경우〉</li> <li>외출중일 때는 즉시 귀가하거나 가까운 공공기관으로 이동</li> <li>준비물: 갈아입을 옷 약간, 휴대폰(충전기), 평소 먹는 약 등 필수품</li> <li>화재예방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수도를 잠금</li> <li>장독이나 우물 등은 뚜껑을 닫고 음식물은 랩을 씌우거나 밀봉</li> <li>가축이나 애완동물은 우리에 가둔 후 충분한 먹이를 줌</li> <li>모든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고 대피완료 표시(출입문에 흰수건)</li> <li>마을별로 지정된 집결지로 걸어서 이동(지자체 비상요원, 마을 이장 등의 안내에 따름)</li> <li>지자체 비상요원의 안내에 따라 제공차량 등으로 구호소로 이동</li> </ul>
	• 구호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이재민 등록

## □ 유의사항

- 방사선비상은 방사선 영향이 국민들에게 미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령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질서 있게 당국의 지시에 따라 행동 하여도 시간은 충분합니다.
- 같은 방사선비상 상황이라도 원자력시설과의 거리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집니다.

- 노인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 재해약자 시설은 청색비상이 발령 되면 지자체의 별도 계획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 구호소에서는 이재민 등록을 통해 가족과 연락하고 만날 수 있으므로 학교, 병원, 직장에 있는 가족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습니다.
- 비상시에는 통화량이 폭증하여 휴대전화 등이 불통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실내나 구호소에서 TV와 라디오를 시청하세요.
- ㅇ 구호소에서는 음식물과 잠자리, 기본적인 생필품이 제공됩니다.
- 갑상선 보호약품(KI)의 분배와 복용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지시 합니다.(임의복용 금지)

#### □ 주민보호조치 시행방법 개요

-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 청색비상(또는 적색비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국민들께 알려드립니다.
- 원자력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설치한 사업자경보망을 통해 예방적 보호조치구역(원전 중심 반경 3~5km)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통보하고,
-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할하고 있는 기초지자체는 민방위 경보망, 가두방송, 직접방문, 이·통장을 통한 전달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통보하며,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조하여 TV·라디오 등으로 알려드리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하여 휴대폰을 통해 긴급재난문자를 전송합니다.
- 일반주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주민보호조치가 수행 됩니다.
- 방사능영향이 부지 밖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방사선비상

상황인 적색비상이 발령되면, 방사성물질 방출 이전에 예방적 보호조치구역(3~5km) 내의 주민들을 예방적 차원에서 즉시 구 호소로 소개하게 되며,

-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원전 중심 반경 20~30km)은 풍향, 풍속, 강수량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방사성물질의 농도를 예측한 결 과를 반영하여 주민소개, 옥내대피 등 적절한 주민보호조치를 결정하게 되고,
- 방사성 물질이 시설 외부로 방출된 이후에는 환경감시 결과를 반영하여 방사능영향이 미치기 전에 주민보호조치를 수행하게 됩니다.
-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주민소개를 지시하게 되면, 소개대상 주민은 마을 주변 집결지에 집결한 후 지방자치단체 방사능방재요원의 안내에 따라 미리 준비된 구호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 집결지는 통상 마을회관, 기차역,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 마을 주민 누구나 알고 있고, 버스 등 교통수단이 정차할 수 있는 곳으로 관할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 구호소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주민들이 방사능 영향 (방사능 구름)을 피해 2~7일 정도 생활하기에 필요한 전기, 수도, 취사 시설, 화장실 등을 갖추었거나 즉시 갖출 수 있는 실내인 각급 학교, 체육관, 강당 등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호소의 선정, 물품 보급, 급식 방법 등 구호소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당해 지역적 특성과 지자체의 사정 등에 따라 최선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가 판단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백색·청색·적색비상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피해의 심각성에 따라 백색, 청색, 정색비상으로 구분합니다.



방사선 영향이 원자로건물 내부에 구하된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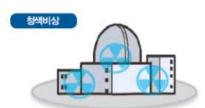
#### 백색비상 시 행동요령 및 대응

#### 행동요령

#### 정부 대응

#### 지자체 대응

- 평상시와 같이 생활
- 예비현장지휘센터
- 발족 운영
- 언론 등을 통해 대국민공개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부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

#### 청색비상 시 행동요령 및 대응

#### 행동요령

-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피 준비
- 정부 대응
- 중앙방사능방재 대책본부 발족 운영
- 현장방사능방재

#### 지자체 대응

- 주민보호조치 준비
- 지휘센터 발족 운영

#### 적색비상



방사선 영향이 원자력발전소 부지 밖으로까지 미칠 것으로 예상

#### 적색비상 시 행동요령 및 대응

#### 행동요령

대피합니다.

• 지자체 방재요원의 지시에 따라 질서있게

#### 정부 대응

• 주민보호조치 결정 • 워전 비상대용 및 사고 수습 통제

#### 지자체 대응

• 주민보호조치 실해

#### 방사선비상 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백색비상일 경우 지자체에서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고, 청색·적색 비상일 경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예방적 보충조치구역 (3~5km)

| 사업자 | 사업자 경보망을 통해 상황 방송

| 지자체 | 민방위 경보망, 기두방송, 직접방문, 아 통장을 통한 전달, 전화

| 정 부 | 긴급재난방송(TV, 라디오 등) 및 긴급재난문자 전송

## 차량 기두방송 민방위 경보망 전화 및 방문 食がび食 텔레비전 라디오 재난문지

####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 (20~30km)

|지자체 | 민방위 경보망, 기두방송, 직접방문, 아롱장을 통한 전달, 전화 | 정 부 | 긴급재난방송(TV, 라디오등) 및 긴급재난문자 전송

#### 방사선비상 발생 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원전사고 시 방사성물질 확산 경로는 바람의 방향 등 기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을 위해서는 공식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 대피 준비 ①

방사능 오염을 막으려면, 외부 공기가 집으로 들어오지 않게 해야 합니다.



#### 대피 준비 ②

화재나 감전 등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대피 준비 ③

음식물과 잠자리, 식수 등 기본적인 생필품은 구호소에서 제공하므로, 평소 먹는 약품, 같아입을 옷 약간, 휴대전화 등 개인에게 꼭 필요한 물품들만 챙깁니다.



#### 대피 준비 ④

가축이나 반려동물이 지낼 수 있도록 물과 먹이를 갖추어 주세요.



#### 대피 안내를 받으면

마을 주변 집결지로 이동한 후,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차량을 이용, 질서 있게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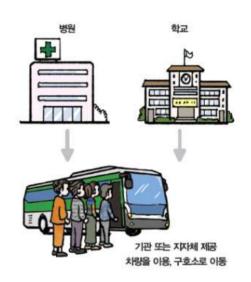
#### 지지체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 질서 있게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 1차 집결자는 지역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안부는 구호소에서

학교, 공공기관, 병원 등에서는 각 기관 또는 지자체 차량으로 구호소로 이동합니다. 직접 찾으러 가지 않아도 구호소에서 가족을 만나거나 안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리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월성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한빛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한울 원전 지역 방사선비상계획구역



## ④ 국가위기관리 영상회의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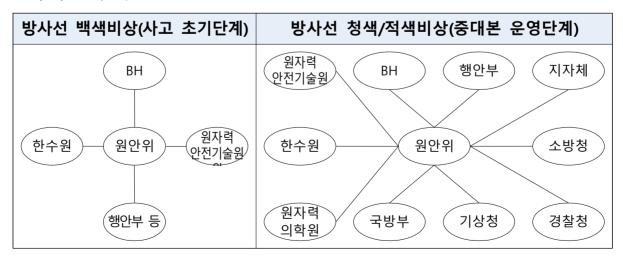
#### □ 개 요

- (목적) 청와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중앙부처, 한국수력원자력,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 긴급구조기관(소방·해경), 지방자치단체 등과 상황 공유, 범정부적 신속 대응
- (연결기관) 국가지도통신망을 통해 279개 기관과 연결

구분	연결기관(279개 기관)
중앙 (26)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원자력안전위원회 •18부 •5청(경찰청, 소방청, 산림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지자체 (245)	• 17개 시·도 및 228개 시·군·구* * 시·군·구는 시·도를 통해 연계
재난관리 책임기관 (8)	• 한국철도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 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질병관리본부

## □ 영상회의 운영

- (대상회의) 상황판단/대책회의,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회의 등
- (참여기관) 국가위기관리센터, 원안위(주관기관), 행정안전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수력원자력, 지방 자치단체 등



※ 재난의 규모 및 대응단계 등에 따라 영상회의 참여기관은 변동 가능

- (참 석 자) 회의 참석대상 및 위기상황 등에 따라 판단 ※ 예: 대통령 회의 주재 시 각 부처 장관 및 시·도지사 참석 등
- (회의내용) 재난의 규모에 따른 조치방향 및 재난관리 단계별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점검하고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총괄·조정
  - (대비태세) 중앙·지역·현장(지역) 지휘·보고체계 구축, 상황파악 및 대응계획 점검, 재난 상황대응체계 강화 및 긴급전파체계 유지
  - (협력·지원체계) 관계기관 재난상황 전파·공유 등 협력체제 가동, 사고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및 민간 구조 현황점검 및 동원체제 구축
  - (대응조치) 재난수습에 필요한 구조·지원 세력 지휘 등 사고대응 총괄지휘 체제 구축

# 5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현황

기 관	부 서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재환경과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	
국 방 부	재난관리지원과 합동참모본부 화생방과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	
환 경 부	수도정책과	
교 육 부	학교안전총괄과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	
경 찰 청	위기관리센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기 상 청	예보정책과	
해양경찰청	경비과	
소 방 청	119구조과	

# ⑥ 참고자료(서식)

# 1. 상황보고서

○○년 ○월 ○일, ○○:○○현재				
보고자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팩스	

제목 :	배	부처
	장관	000
	차관	000
	○○실장	
7   0	○○국장	
개 요	○○국장	
1. 접수시간/출처 :	○○담당	
2. 사고내용 3. 현장 조치사항	청와대상황실	
3. 현등 조사사용 4. 우리부 조치사항	국가안보실	
5. 원인 및 재발방지대책	총리실	
(중간・최종보고서에 작성)	행정안전부	
6. 참고사항	○○부	
- 언론 동향, 여론, 기타	○○부	
	OO부	
	○○청	
	○○청	

# 2. 자체위기평가회의(상황판단회의) 보고서

위기유형			
경보내용	(관심·주의·경계·심각) 경보 발령		
보고번호		기 관 명	행정안전부
관련근거 (출처)			
통보기관			
1. 관련상황/정보			
2. 분석/판단			
3. 조치사항			
작 성 자			

# 소관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연락처	농축산물 위생품질관리팀	전화	044-201-2971~3
		FAX	044-863-9219

※ 본 매뉴얼에 대하여 수정, 또는 문의사항이 있을경우 상기 연락처로 연락 바랍니다.